

경상북도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7049호 2026년 7월 13일(월)

경 상 북 도

■ 조 례

-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90호) 6

회 람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편집:대변인실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91호)	11
○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92호)	19
○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93호)	21
○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94호)	27
○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95호)	30
○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96호)	31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97호)	33
○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98호)	34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99호)	38
○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500호)	40
○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501호)	41
○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502호)	58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503호)	62

-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504호) 67
-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505호) 69
-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506호) 73
-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507호) 78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508호) 83

■ 규 칙

- 경상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 규칙 제3119호) 88
-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규칙 제3120호) 94

■ 훈 령

-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경상북도 훈령 제1675호) 114

■ 고 시

- 2026년도 경상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271호) 124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272호) 126
- 사망지 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273호) 132

- 웰빙-스테이 레포츠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274호) 136
- 기일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275호) 169
- 유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276호) 171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277호) 173

■ 공 고

- 경상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1374호) 180
- 대하리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1384호) 193
- 금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1385호) 224
-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1390호) 251

시 군

■ 고 시

- 구미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26-165호) 255
- 경산 도시관리계획(꿈누리어린이공원) 결정(변경)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6-129호) 257

■ 공 고

- 구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안) 공람공고
(구미시 공고 제2026-2048호) 260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 3-126 외 2개소) 실시계획 열람공고
(상주시 공고 제2026-1084호) 262
- 영양 군계획시설(수변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재열람 공고
(영양군 공고 제2026-618호) 265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6-417호) 278
-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6-419호) 279
-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6-420호) 280

■ 공 고

- 수시 재산공개대상자 재산공개목록 공고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6-2호) 282



경 상 북 도

조 레

경상북도 조례 제5490호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

②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선임 절차) ① 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겸직금지 및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
2. 도와 교육청의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 또는 친자나 형제자매인 사람

제5조(위촉 및 결산검사 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선임된 날부터 의회의 결산 승인 의결일까지로 한다.

③ 결산검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표 위원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신분 상실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 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결로 해임하거나 위촉해제할 수 있고, 그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7조(대표위원 및 간사) ① 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과 간사 각 1명을 선출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결산검사의 범위와 협조)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경상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설명 또는 사업 현장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의 결산검사 순서는 도와 교육청이 매년 교차되도록 정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도지사과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위촉 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간은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결산검사 기간 종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 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 기간을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91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의원이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상설연구단체 및 현안연구단체를 포함한다.
2. “상설연구단체”란 특정한 분야에 지속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된 연구단체를 말한다.
3. “현안연구단체”란 특정 정책과제 또는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연구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는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발굴·조사·연구 및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용역 과제의 심의·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활용에 관한 사항
5. 우수 연구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의원 각 2명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3명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를 참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5. 해당 안건을 수행하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상설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① 상설연구단체를 등록하려는 의원은 매년 10월 25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설연구단체는 위원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8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각 의원은 하나의 상설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상설연구단체 등록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상설연구단체 대표는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상설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다음 연도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상설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상설연구단체의 계획 및 변경) ① 상설연구단체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활동 계획서와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주제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구단체에 심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설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상설연구단체 운영) ① 연구기간은 연구활동 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토론회·간담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상설연구단체 대표는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전문가 1명을 상설연구단체의 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구주제의 연구기간 종료될 때까지로 할 수 있다.

④ 외부전문가는 해당 상설연구단체와 공동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⑤ 상설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매년 10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비의 사용내역 및 연구용역보고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상설연구단체는 사용하고 남은 연구활동비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비) ① 의장은 상설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정책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강사료·전문가 등의 자문경비와 자료발간비 등
2. 그 밖에 세미나·공청회·심포지엄·간담회·토론회 및 설문조사 비용 등의 필요경비

- ④ 상설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⑤ 의장은 상설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현안연구단체의 등록 및 해산) ① 현안연구단체는 지역현안 및 의원정책개발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현안연구단체는 의원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각 의원은 상설연구단체와는 별도로 2개 이하의 현안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소관 현안 등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하나의 연구단체로 보고 현안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현안연구단체 가입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⑤ 현안연구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실시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보고 이후 현안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연구용역 계획의 승인 및 제안서 평가, 연구용역비의 조정 등을 위하여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둔다.

제15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②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결과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우수연구단체 시상)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활동이 우수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이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연구 관계자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의원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운영 및 그에 속한 연구단체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총괄 사무는 예산입법담당관이 담당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92호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하며”를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 추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을 “의견을 제출”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상임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교섭단체는 미리 의정활동 계획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의장은 교섭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93호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해양 역량을 강화하고, 경상북도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교육 활성화 및 해양문화 창달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방안
3.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계획
4.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해양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방안
6. 해양교육의 인식 제고 및 사회적 확산 방안
7. 해양문화 관련 유형·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보존 방안
8.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 계획
9. 해양수산부, 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방안
10.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해양교육 기회 확대 방안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2. 해양교육 관련 교재·콘텐츠 개발, 교육환경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3. 해양문화 및 해양역사 자원의 발굴·조사·연구와 보전·활용
4.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 및 산업 활성화 지원
5. 해양문화 프로그램 운영, 체험·관광 연계 및 문화시설 조성
6. 동해안·울릉도·독도의 해양문화 자원 보전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외 교류
8.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해양교육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부, 경상북도교육청 등과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도내 해양문화자원의 연계 및 활용 방안
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관련 시군 지원 방안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도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명하는 경상북도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교육 또는 해양문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법인·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해양교육의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질 높은 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와 각종 해양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2. 해양교육 전문강사 및 전문인력 양성·활용 지원

3. 해양교육 자료·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도지사는 해양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참여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해양문화의 확산 및 보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문화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하고,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동해안과 관련된 사람, 언어, 문학, 역사, 철학, 풍속, 정체성, 기억 등 해양문화 관련 유형·무형의 자산

2. 동해안, 울릉도·독도의 자연경관, 전통 어구, 어업기술 등 보존가치가 높은 자산

3. 등대, 항만시설, 수산물창고 등 근대 해양문화 건축물

4. 도서·사진·동영상 등 도 해양문화를 기록·전승·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문화 자산 및 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하여 도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울릉도·독도의 해양문화 자산 보전을 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국내외 교류협력)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계획은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지역계획으로 본다.

경상북도 조례 제5494호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이철우 ㉮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원의 임면)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사·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5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법령,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제외한다)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연임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 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③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해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출자·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의3(임원추천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명과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고, 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은 정관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도의 공무원(도의를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 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출자·출연 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도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의4(임원후보자 추천 등) ①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 평가항목, 심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95호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96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970명”을 “7,97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296명”을 “2,29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59명”을 “16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기 관 별 직 급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합계		7,971	-						
정 무 직		3	1					2	
일 반 직	소 계	2,183	-						
	1급	0							0
	2급	2	1			1			
	2~3급	2	1	1					
	3급	15	12		1	2			0
	3~4급	3	2	1					
	4급	104	70	10	4	10	8	1	1
	5급 이하	2,041	-						
	전문경력관	16	-						
별 정 직	소 계	16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2	-						
연 구 직	소 계	245	-						
	연구관	47			46		1		
	연구사	198	-						
지 도 직	소 계	31	-						
	지도관	10			10				
	지도사	21	-						
소 방 직	소 계	5,489	-						
	소방정	31	7		24				
	소방령 이하	5,458	-						
경 찰 직	소 계	4	4						
	경 감	4	4						

경상북도 조례 제5497호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26년 8월 31일”을 “2031년 8월 31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98호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의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나.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3. 편의증진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경감하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사업
2. 편의증진 관련 단체 지원 사업
3. 생활편의 보조기구 지원 사업
4.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5. 편의증진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관련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도지사는 도 및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시설 중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99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조례에서“관사””를 “조례에서 “관사””로, “소유하는”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비상대기시설은 제외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관사의 사용기준)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 및 부지사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 등이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사의 위치·용도 및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시설관리, 재난 대응 등 직무상 필요한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6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물품 설치 및 교체비(조달청의 ‘내용연수’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비품인 경우에 한한다)
4.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의 주택관리비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500호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경북도립대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북도립대학교는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및 이 조례 시행 전에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501호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투자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선도지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선도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

2. 해당 지역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으로 구성되지 아니할 것. 다만, 도로·하천 등으로 분리된 경우로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선도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제8조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선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경상북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 및 고시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조(선도지구 변경) 도지사가 선도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도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축소(누적 축소분이 최초 지정된 선도지구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요 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이용계획 변경(누적 변경분이 최초 지정된 주요 용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와 용지의 폐지 또는 신설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선도지구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선도지구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이하 “선도지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선도지구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고시, 통지 및 공람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도지사는 선도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이하 “선도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선도지구심의회 구성) ① 선도지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선도지구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선도지구심의회 소관 부서의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산림, 환경 분야 전문가
3. 토목, 건축 및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4. 관광, 문화, 예술 분야 전문가
5. 경제, 투자유치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들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전임 위원들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도지구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도지구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선도지구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선도지구심의회 운영) ① 선도지구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선도지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⑥ 선도지구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안건, 출석자 명단, 위원별 발언 요지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하여 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⑦ 선도지구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선도지구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선도지구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2. 선도지구 지역 주민
3. 관계 공무원
4.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전문가
5. 그 밖에 선도지구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산림투자선도지구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선도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선도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선도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2.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방안

3. 관광·휴양·치유 시설의 복합적 연계·운영 방안

4. 지역사회 상생 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선도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군수,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시·군

2. 영 제46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민간투자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등록업체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사업연도 투자계획 금액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총사업비(보상비 제외)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

나. 선도지구 사업구역 토지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자(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청의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사업자로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 받은 부동산신탁업자

라. 민간투자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담기업으로서 자기 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 이 경우 전담기업이 다수인 때에는 출자비율 상위 3인의 출자금의 합이 총출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투자선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6. 선도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들이 산림투자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도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고려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산림투자선도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산림투자 선도지구 사업시행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제19조제7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 파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시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계획 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7.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산림환경의 중대한 훼손이나 안전상 위해를 초래하여 도지사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누적 변경분이 최초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 기간의 단축 또는 3개월 이내의 연장(누적 연장기간이 최초 사업 기간에서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상호의 변경(사업시행자 자체의 변경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도로(진입도로 및 산불진화임도 포함), 용수공급시설, 방재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계획
3. 부동산·동산에 대한 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
4. 존치하는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 등에 관한 관리계획
5. 산림환경, 경관, 생태 및 문화유산 보존대책
6. 산림소득, 관광, 치유산업 등 연계사업 계획
7. 선도지구 관리 방안
8.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고, 그 고시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명칭, 주요 내용 및 사업기간
4. 총사업비,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법 제47조 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림투자선도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 준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법 제4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투자기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선도지구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및 절차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우선 채용
2. 지역 업체 및 자재 우선 사용
3. 선도지구 내 산불 예방 및 방재 시설의 공동 활용·유지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산림투자선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접수기관이 작성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단체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주소			E-mail		
신청 구역 개요	지 구 명					
	위치					
	총 면 적					
	소유구분	사유림		국 · 공유림		그 외
사업의 목적		자금조달계획(백만원)	합계			
사업의 내용			내 자	소계		
				국고		
				지방비		
				자기자금		
사업기간			외국 자본	소계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방식				차관		
				기타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투자선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 부 서 류	1. 위치도 및 사업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2. 민간투자자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 승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법인만 한함)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 수	→	검 토	→	지정 · 고시	→	사업시행자 지정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시 · 도)		처리기관 (시 · 도)		처리기관 (시 · 도)		처리기관 (시 · 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산림투자선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서

지 정 내 용	사업시행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본사또는 주사무소)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ha)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시행자 지정조건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
기업(단체)을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직인

80mm×120mm[백상지(150g/㎡)]

별지 제3호서식]

산림투자선도지구 사업시행자 관리대장

연번	지구명	지정번호	지정일자	위치	면적 (ha)	사업시행자 (사업시행방식)	대표자 성명	사업기간	비고

※ 변경취소 내역

연번	지구명	지정번호	면적(ha)	변경(취소)일자	변경(취소)사유	비고

[별지 제4호서식]

사업완료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접수기관이 작성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단체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주소		E-mail		
신청 내용	사업명				
	사업목적				
	위치				
	총면적(ha)				
	사업기간				
토지 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ha)				
기반 시설 개요	시설명				
	개요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투자선도지구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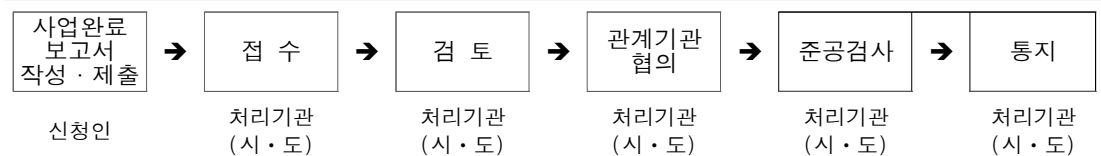
신청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 부 서 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및 현황측량도 포함)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5. 신·구지적대조도 및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귀속 시설 대비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산림투자선도지구 준공검사 증명서

사업시행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본사또는 주사무소)	
사업명(지구명)	
사업위치	
사업면적(ha)	
준공연월일	
준공검사 사항	

귀하가 시행한 산림투자선도지구사업에 대하여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직인

80mm×120mm[백상지(150g/㎡)]

경상북도 조례 제5502호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청년 예술인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
3. 청년 예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
4. 청년 예술인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
5. 청년 예술인 복지증진 및 긴급 지원
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2.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3. 청년 예술인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청년 예술인의 창작물 공연·전시 지원사업
5.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분야 창업 및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6.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
7.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및 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분야 연구·조사 사업
 2.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3. 공동창작 활동 지원사업
 4.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의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절차 및 기준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503호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관광경쟁력”을 “의 관광경쟁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기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역관광”을 “관광상품 개발, 지역관광”으로, “일부 보조사업

지원”을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염병 확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제3조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운용, 관리”를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또는”을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을 “편의시설 건설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개선 운영사업”을 “운영 개선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위하여”를 “위하여 융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관광호텔, 유스호스텔 등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및 개·보수사업

5.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사업

제4조제1항 중 “융자,”를 “융자 또는”으로, “당초”를 “융자받거나 보조받을 때에”로, “이외에 이를”을 “이외의 용도로 기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융자,”를 “융자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를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 또는 보조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계획)”을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를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 ③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금의”를 “도지사는 기금의”로, “관리 및 운용”을 “관리·운용”으로,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명”을 “9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부서의 장, 위원은 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부서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관광, 건설 및 금융·회계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⑤ 위촉직 위원 중 민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건설 및 금융·회계분야 위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위원이”로, “심사업무에서 배척된다”

를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안건”을 “위원이 안건”으로, “자문”을 “자문, 연구, 용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최근”을 “위원이 최근”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안건”을 “위원이 해당 안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을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으로, “기피신청”을 “위원회에 기피신청”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11조제3항 중 “위원은”을 “위원이”로, “해당하면”을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심사를”을 “심의·의결을”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회피신청 대상자임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4.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리 운용”을 “관리·운용”으로 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기금운용 결산보고

4. 기금의 용자 및 보조에 관한 사항

제15조의 제목 “(위원회 회의 등)”을 “(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로, “인정하는”을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담당국장”을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작성하여”를 “작성하여 「경상북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3조제2항 제1호의”로 한다.

제20조 중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504호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0조”를 “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립·
변경하는 때”를 “수립·변경하려는 경우”로,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경상북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6조”를
“영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표”를 “도 누리집 등에 공표”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도의회 권고사항 반영) 도지사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의회가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경상북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경상북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청소년, 노인”을 “여성”으로, “전문성”을 “대표성”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시책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도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505호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업기계 사용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농업기계 안전사고”란 농업기계의 운행·조작·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홍보, 안전장비 보급, 농업기계 이용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안전대책
4. 농업기계 도로주행 안전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안전사고 예방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추진
3. 농업기계 도로주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사업

4. 농업기계 운행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5.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 및 연구사업 추진
6.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7. 농업기계 안전사고 관련 정보 수집 및 통계 관리
8. 그 밖에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올바른 사용 방법 및 안전수칙
2. 농업기계 사고 사전예방 요령
3.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농업기계 도로주행 안전수칙

③ 도지사는 고령 농업인 등 농업기계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고려하여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영농이 집중되는 시기 등 농업기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에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수 있다.

제8조(안전장비 및 시설 지원) 도지사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안전장비 보급 및 교체 지원
2. 농업기계 안전표지 및 반사판 설치 지원
3. 노후·위험 농업기계 개선 지원
4. 그 밖에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취약계층 보호대책) 도지사는 고령 농업인, 영세 농업인 등 농업기계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및 현장 지도
2. 안전장비 우선 지원 및 농업기계 안전점검 지원
3. 사고 예방을 위한 방문 교육 및 안전 컨설팅
4. 그 밖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시·군, 농업 관련 기관·단체, 농업기계 제조 및 유통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홍보
2. 농업기계 안전장비 보급 및 사고 예방사업 추진
3. 농업기계 안전사고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조사
4.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
5. 그 밖에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506호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치하는 내수면
관상어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관상어 연구,
관련 산업의 육성·홍보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설치·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2. “전시홍보관”이란 관상어 및 관련 산업을 전시·홍보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창업임대사무실”이란 관상어 산업 관련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설치된 사무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전시홍보관 내 카페, 휴게실 등 방문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상어 산업 연구·교육 등 사업 추진
2. 전시·홍보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관상어 산업 관련 창업지원 및 입주시설 운영
4.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전시홍보관 운영) ① 전시홍보관은 무료 관람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 ② 전시홍보관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 이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할 수 있다.

- ③ 전시홍보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휴관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 ④ 도지사는 관상어 산업의 대중적 인식 제고 및 산업홍보를 위하여 상설전시, 기획전시, 체험·홍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참가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관람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전시물의 보호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관람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3.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4. 실내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5. 그 밖에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관람객의 준수사항)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2. 음주, 고성방가, 악취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
4. 동·식물 및 전시생물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7조(부대시설의 활용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관람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매점,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

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창업임대사무실 입주자격) 창업임대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상어 및 관련 산업의 예비창업자
2. 관상어 및 관련 산업에서 창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관상어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창업임대사무실 입주자 선정) ① 창업임대사무실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관상어 산업과의 연관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10조(창업임대사무실 운영) 창업임대사무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기간,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도지사는 부대시설 및 창업임대사무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4. 시정 요구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입주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① 제7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원상복구 등) 센터 내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도지사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507호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경상북도민 모두가 편리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나이, 성별, 국적,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디자인을 말한다.

1. 누구나 손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2. 사용자들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3.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4.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公共空間)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공공건축
3.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조제3호의 공공시설물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과 제도개선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홍보·교육
 4.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시·군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시범사업 시행)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장·군수 또는 도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권고기준 수립)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권고기준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 및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물·가로시설물·공원 등 공적인 도시환경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의 신설,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예산지원)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8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적용하여 신규 시설물의 설치, 신축, 증·개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관할 시·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508호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6.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시설 및 개별 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를 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3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지급(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대학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연구소를 도내에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소 건립비(부지매입비, 건축비를 포함한다)
2. 연구용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
3. 연구인력 인건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비스산업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지 원 항 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액 (억원)
관광, 물류사업 투자보조금	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20
	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40명 이상	30
	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70명 이상	40
	총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180명 이상	50
문화·지식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	총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5명 이상	5
	총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10
	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	20
	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	40
	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180명 이상	50



경 상 북 도

규 칙

경상북도 규칙 제3119호

경상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경상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예산, 회계, 감사, 재무·경영,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선정방법)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지방공기업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한다. 다만,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선임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선임 사실을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11조(계약체결) 제9조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10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A	B	C	D	E	
[정량] 감사 수행 역량 (40)	① 업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5	15년 이상 (5)	10년 이상 (4)	5년 이상 (3)	3년 이상 (2)	3년 미만 (1)	
	② 징계현황 -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가준)	5	0건 이하 (5)	3건 미만 (4)	6건 미만 (3)	10건 미만 (2)	10건 이상 (1)	
	③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제출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공인회계사 제외)	10	20명 이상 (10)	15명 이상 (8)	10명 이상 (6)	5명 이상 (4)	5명 미만 (2)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감사실적	20	10건 이상 (20)	8건 이상 (18)	6건 이상 (16)	4건 이상 (14)	4건 미만 (12)	
[정성] 감사 수행 계획 (60)	⑤ 소요예산 및 제안금액 평가 - 예산적정성 상대평가 - 감사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대비 가격 합리성	10	매우 적절 (10)	적절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⑥ 사후서비스 제공 - 회계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및 재무적 위험요소 개선 권고 등	10	매우 적절 (10)	적절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⑦ 감사전략의 적합성 - 공공기관 특성 이해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숙달 정도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⑧ 감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감사 수행인력 구성원 수,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에 전문성 등	25	매우 적절 (25)	적절 (20)	보통 (18)	미흡 (12)	매우 미흡 (10)	
합계		100						

2. 평가방법

- 가. 정량평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나.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단, 최저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 다. 동점 발생 시 배점이 정성평가의 합계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다만, 정성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의결로 결정한다.

경상북도 규칙 제3120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1]

경상북도 직급·직렬별 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총계	7,971	1,588	161	5,610	209	374	22	7
정무직 계	3	1	0	0	0	0	2	0
일반직 계	2,183	1,370	153	94	198	341	20	7
2급 소계	2	1	0	0	1	0	0	0
이사관	2	1	0	0	1	0	0	0
2~3급 소계	2	1	1	0	0		0	0
이사관•부이사관	2	1	1	0	0	0	0	0
3급 소계	15	12	0	1	2	0	0	0
부이사관	15	12	0	1	2	0	0	0
3~4급 소계	3	2	1	0	0	0	0	0
부이사관•서기관	3	2	1	0	0	0	0	0
4급 소계	104	70	10	4	10	8	1	1
행정	35	25	5	0	2	1	1	1
과학기술	4	2	0	0	1	1	0	0
행정·과학기술	58	41	5	4	6	2	0	0
과학기술·농업연구관	1	0	0	0	0	1	0	0
과학기술·녹지연구관	1	0	0	0	0	1	0	0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과학기술·수의연구관	2	1	0	0	0	1	0	0
과학기술·해양수산연구관	1	0	0	0	1	0	0	0
행정·과학기술· 학예연구관	1	1	0	0	0	0	0	0
과학기술·농업연구관· 수의연구관	1	0	0	0	0	1	0	0
5급 소계	441	329	25	10	39	32	5	1
행정	212	160	19	9	11	7	5	1
공업	5	3	0	0	2	0	0	0
농업	9	9	0	0	0	0	0	0
녹지	8	5	0	0	0	3	0	0
수의	4	4	0	0	0	0	0	0
해양수산	8	0	0	0	8	0	0	0
보건	1	1	0	0	0	0	0	0
환경	2	2	0	0	0	0	0	0
시설	29	27	0	0	0	2	0	0
방송통신	2	2	0	0	0	0	0	0
운전	2	2	0	0	0	0	0	0
행정·사회복지	8	8	0	0	0	0	0	0
행정·사서	2	0	0	0	0	2	0	0
행정·속기	1	0	1	0	0	0	0	0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행정·공업	16	9	0	0	7	0	0	0
행정·농업	10	10	0	0	0	0	0	0
행정·녹지	12	10	0	0	0	2	0	0
행정·해양수산	3	0	0	0	3	0	0	0
행정·보건	1	1	0	0	0	0	0	0
행정·환경	3	3	0	0	0	0	0	0
행정·시설	29	21	4	0	4	0	0	0
행정·방송통신	2	2	0	0	0	0	0	0
행정·학예연구관	1	1	0	0	0	0	0	0
행정·기록연구관	1	1	0	0	0	0	0	0
행정·공업연구관	1	1	0	0	0	0	0	0
공업·환경	2	2	0	0	0	0	0	0
공업·시설	3	1	0	0	0	2	0	0
농업·수의	2	2	0	0	0	0	0	0
농업·농업연구관	1	0	0	0	0	1	0	0
녹지·시설	2	2	0	0	0	0	0	0
녹지·녹지연구관	3	0	0	0	0	3	0	0
수의·수의연구관	10	2	0	0	0	8	0	0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관	3	0	0	0	3	0	0	0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보건·약무	1	1	0	0	0	0	0	0
행정·공업·환경	1	1	0	0	0	0	0	0
행정·공업·시설	2	2	0	0	0	0	0	0
행정·농업·수의	3	2	0	0	0	1	0	0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0	0	0	0	0	0
행정·농업·환경	1	1	0	0	0	0	0	0
행정·녹지·환경	1	1	0	0	0	0	0	0
행정·녹지·시설	1	1	0	0	0	0	0	0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0	0	0	0	0	0
행정·보건·약무	1	1	0	0	0	0	0	0
행정·보건·간호	5	5	0	0	0	0	0	0
행정·보건·환경	3	2	0	1	0	0	0	0
행정·환경·해양수산	1	0	0	0	1	0	0	0
행정·환경·시설	1	1	0	0	0	0	0	0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0	0	0	0	0	0
행정·시설·학예연구관	1	1	0	0	0	0	0	0
공업·환경·시설	2	2	0	0	0	0	0	0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0	0	0	0	0	0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0	0	0	0	0	0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2	2	0	0	0	0	0	0
행정·공업·약무·간호	1	1	0	0	0	0	0	0
행정·공업·보건·간호	1	1	0	0	0	0	0	0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0	0	0	0	0	0
행정·농업·녹지·환경	1	1	0	0	0	0	0	0
행정·농업·환경·시설	1	0	1	0	0	0	0	0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0	0	0	0	0	0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0	0	0	0	0	0
사회복지·보건·의무·간호	1	1	0	0	0	0	0	0
공업·보건·환경·시설	1	1	0	0	0	0	0	0
농업·수의·농업연구관· 수의연구관	1	0	0	0	0	1	0	0
의무·의료기술·보건·간호	1	1	0	0	0	0	0	0
6급 소계	726	468	61	24	58	105	8	2
행정	297	198	49	11	11	18	8	2
세무	6	6	0	0	0	0	0	0
전산	16	14	0	2	0	0	0	0
사회복지	7	7	0	0	0	0	0	0
사서	1	0	0	0	0	1	0	0
속기	2	0	2	0	0	0	0	0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공업	21	13	0	2	5	1	0	0
농업	22	17	0	0	0	5	0	0
녹지	29	15	0	0	0	14	0	0
수의	37	4	0	0	0	33	0	0
해양수산	21	0	0	0	21	0	0	0
보건	3	3	0	0	0	0	0	0
식품위생	1	1	0	0	0	0	0	0
간호	1	1	0	0	0	0	0	0
환경	11	10	0	0	1	0	0	0
시설	74	60	0	0	3	11	0	0
방송통신	8	8	0	0	0	0	0	0
운전	10	5	0	2	0	3	0	0
전기운영	1	0	0	1	0	0	0	0
기계운영	1	0	0	0	0	1	0	0
열관리운영	1	0	0	0	0	1	0	0
행정·세무	6	6	0	0	0	0	0	0
행정·전산	12	8	3	0	0	1	0	0
행정·사회복지	12	7	4	1	0	0	0	0
행정·사서	1	0	0	0	0	1	0	0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행정·공업	17	10	0	0	5	2	0	0
행정·농업	5	5	0	0	0	0	0	0
행정·녹지	7	6	0	0	0	1	0	0
행정·해양수산	5	0	0	0	5	0	0	0
행정·보건	4	4	0	0	0	0	0	0
행정·환경	3	3	0	0	0	0	0	0
행정·시설	16	13	1	1	1	0	0	0
행정·위생	1	1	0	0	0	0	0	0
행정·방송통신	1	0	0	1	0	0	0	0
행정·기록연구사	1	1	0	0	0	0	0	0
세무·전산	1	1	0	0	0	0	0	0
전산·방송통신	1	0	0	1	0	0	0	0
공업·농업	1	0	0	1	0	0	0	0
공업·환경	3	3	0	0	0	0	0	0
공업·시설	2	1	0	0	0	1	0	0
공업·방송통신	1	0	0	1	0	0	0	0
농업·녹지	1	1	0	0	0	0	0	0
농업·수의	3	3	0	0	0	0	0	0
농업·농업연구사	4	2	0	0	0	2	0	0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녹지·녹지연구사	1	0	0	0	0	1	0	0
수의·수의연구사	8	2	0	0	0	6	0	0
해양수산·환경	1	0	0	0	1	0	0	0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사	4	0	0	0	4	0	0	0
보건·식품위생	2	2	0	0	0	0	0	0
보건·약무	1	1	0	0	0	0	0	0
보건·간호	5	5	0	0	0	0	0	0
보건·환경	2	2	0	0	0	0	0	0
의료기술·간호	1	1	0	0	0	0	0	0
환경·시설	2	2	0	0	0	0	0	0
행정·전산·환경	1	1	0	0	0	0	0	0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0	0	0	0	0	0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0	0	0	0	0	0
행정·공업·보건	1	1	0	0	0	0	0	0
행정·공업·환경	1	1	0	0	0	0	0	0
행정·공업·방송통신	3	0	2	0	1	0	0	0
행정·농업·수의	2	2	0	0	0	0	0	0
행정·녹지·시설	1	1	0	0	0	0	0	0
행정·보건·간호	1	1	0	0	0	0	0	0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행정·보건·환경	1	1	0	0	0	0	0	0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0	0	0	0	0	0
공업·시설·방재안전	1	1	0	0	0	0	0	0
공업·보건·약무	1	1	0	0	0	0	0	0
농업·수의·농업연구사	2	0	0	0	0	2	0	0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0	0	0	0	0	0
행정·농업·수의·방재안전	1	1	0	0	0	0	0	0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1	1	0	0	0	0	0	0
7급 소계	649	389	36	32	57	127	5	3
행정	250	182	25	9	15	12	4	3
세무	7	7	0	0	0	0	0	0
전산	13	10	0	1	1	1	0	0
사회복지	5	5	0	0	0	0	0	0
사서	2	0	0	1	0	1	0	0
속기	4	0	4	0	0	0	0	0
방호	1	0	0	0	0	1	0	0
공업	43	10	0	8	6	19	0	0
농업	21	12	0	0	0	9	0	0
녹지	24	8	0	0	0	16	0	0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수의	31	0	0	0	0	31	0	0
해양수산	17	0	0	0	17	0	0	0
보건	3	3	0	0	0	0	0	0
식품위생	2	2	0	0	0	0	0	0
간호	3	2	0	1	0	0	0	0
환경	3	3	0	0	0	0	0	0
시설	62	46	0	1	3	12	0	0
방재안전	5	5	0	0	0	0	0	0
방송통신	9	5	0	2	1	1	0	0
시설관리	3	0	0	1	1	1	0	0
운전	20	7	2	3	3	5	0	0
전기운영	1	1	0	0	0	0	0	0
사육운영	1	0	0	0	1	0	0	0
사무운영	2	0	1	0	1	0	0	0
행정·세무	2	2	0	0	0	0	0	0
행정·전산	11	9	1	0	0	0	1	0
행정·사회복지	13	12	1	0	0	0	0	0
행정·사서	4	0	0	0	0	4	0	0
행정·공업	6	5	0	0	1	0	0	0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행정·농업	4	4	0	0	0	0	0	0
행정·녹지	3	2	0	0	0	1	0	0
행정·보건	1	1	0	0	0	0	0	0
행정·의료기술	1	1	0	0	0	0	0	0
행정·환경	5	4	0	1	0	0	0	0
행정·시설	14	11	0	0	1	2	0	0
행정·학예연구사	2	1	0	0	1	0	0	0
전산·환경	1	1	0	0	0	0	0	0
전산·방송통신	1	0	0	1	0	0	0	0
공업·농업	1	0	0	0	0	1	0	0
공업·해양수산	1	0	0	0	1	0	0	0
공업·시설	2	1	0	0	0	1	0	0
공업·방송통신	2	1	0	1	0	0	0	0
농업·수의	3	3	0	0	0	0	0	0
농업·농업연구사	1	0	0	0	0	1	0	0
수의·수의연구사	4	1	0	0	0	3	0	0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사	3	0	0	0	3	0	0	0
보건·식품위생	4	4	0	0	0	0	0	0
보건·의료기술	1	1	0	0	0	0	0	0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보건·간호	4	3	0	1	0	0	0	0
보건·환경	1	1	0	0	0	0	0	0
보건·위생	1	1	0	0	0	0	0	0
식품위생·약무	1	1	0	0	0	0	0	0
환경·시설	1	1	0	0	0	0	0	0
시설·해양수산	1	0	0	0	1	0	0	0
시설·방재안전	1	1	0	0	0	0	0	0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0	0	0	0	0	0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0	0	0	0	0	0
행정·농업·환경	2	0	2	0	0	0	0	0
행정·보건·간호	1	1	0	0	0	0	0	0
행정·보건·환경	3	3	0	0	0	0	0	0
행정·보건·위생	1	1	0	0	0	0	0	0
공업·시설·방재안전	1	0	0	1	0	0	0	0
농업·녹지·수의	1	1	0	0	0	0	0	0
농업·수의·농업연구사	1	0	0	0	0	1	0	0
수의·수의연구사· 보건연구사	3	0	0	0	0	3	0	0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0	0	0	0	0	0
농업·수의·농업연구사· 수의연구사	1	0	0	0	0	1	0	0

기관별 직급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8급 소계	213	87	15	19	28	63	1	0
행정	80	46	4	6	8	15	1	0
세무	2	2	0	0	0	0	0	0
전산	4	3	0	0	0	1	0	0
사회복지	2	2	0	0	0	0	0	0
숙기	2	0	2	0	0	0	0	0
공업	17	0	0	6	5	6	0	0
농업	7	2	0	0	0	5	0	0
녹지	10	2	0	0	0	8	0	0
해양수산	10	0	0	0	10	0	0	0
보건	1	1	0	0	0	0	0	0
식품위생	2	1	0	1	0	0	0	0
간호	1	1	0	0	0	0	0	0
환경	1	1	0	0	0	0	0	0
시설	25	8	0	1	0	16	0	0
방송통신	7	5	0	0	1	1	0	0
시설관리	4	0	0	1	0	3	0	0
운전	16	1	3	3	3	6	0	0
전기운영	1	0	0	1	0	0	0	0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행정·세무	1	1	0	0	0	0	0	0
행정·전산	2	2	0	0	0	0	0	0
행정·사회복지	1	1	0	0	0	0	0	0
행정·사서	3	0	1	0	0	2	0	0
행정·시설	2	1	1	0	0	0	0	0
행정·방송통신	1	0	0	0	1	0	0	0
공업·환경	3	3	0	0	0	0	0	0
보건·식품위생	1	1	0	0	0	0	0	0
보건·간호	2	2	0	0	0	0	0	0
행정·전산·방송통신	2	0	2	0	0	0	0	0
행정·농업·환경	2	0	2	0	0	0	0	0
행정·보건·환경	1	1	0	0	0	0	0	0
9급 소계	12	1	1	1	3	6	0	0
행정	2	0	1	0	0	1	0	0
사서	1	0	0	0	0	1	0	0
공업	1	0	0	1	0	0	0	0
농업	1	0	0	0	0	1	0	0
녹지	1	0	0	0	0	1	0	0
해양수산	3	0	0	0	3	0	0	0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방송통신	1	1	0	0	0	0	0	0
시설관리	1	0	0	0	0	1	0	0
운전	1	0	0	0	0	1	0	0
전문경력관 소계	16	10	3	3	0	0	0	0
가군 소계	3	2	0	1	0	0	0	0
비상계획관	1	1	0	0	0	0	0	0
농기계교육교관	1	0	0	1	0	0	0	0
촬영편집기사	1	1	0	0	0	0	0	0
나군 소계	9	5	2	2	0	0	0	0
화생방관리원	1	1	0	0	0	0	0	0
농기계교육교관	2	0	0	2	0	0	0	0
촬영편집기사	2	2	0	0	0	0	0	0
통상주재원	1	1	0	0	0	0	0	0
투자통상요원	1	1	0	0	0	0	0	0
사진영상촬영요원	2	0	2	0	0	0	0	0
다군 소계	4	3	1	0	0	0	0	0
사진영상촬영요원	1	0	1	0	0	0	0	0
촬영편집기사	3	3	0	0	0	0	0	0
별정직 계	16	7	8	0	0	1	0	0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1급상당 소계	1	1	0	0	0	0	0	0
지방관리관·경제부지사	1	1	0	0	0	0	0	0
4급상당 소계	3	1	2	0	0	0	0	0
국제관계대사	1	1	0	0	0	0	0	0
행정·별정(전문위원)	1	0	1	0	0	0	0	0
행정·과학기술· 별정(전문위원)	1	0	1	0	0	0	0	0
5급상당 소계	9	5	4	0	0	0	0	0
비서관	5	5	0	0	0	0	0	0
행정·별정(전문위원)	2	0	2	0	0	0	0	0
행정·농업·별정(전문위원)	1	0	1	0	0	0	0	0
행정·시설·별정(전문위원)	1	0	1	0	0	0	0	0
6급상당 소계	1	0	1	0	0	0	0	0
의장비서	1	0	1	0	0	0	0	0
7급상당 소계	2	0	1	0	0	1	0	0
비서	1	0	0	0	0	1	0	0
의장비서	1	0	1	0	0	0	0	0
연구직 계	245	7	0	195	11	32	0	0
연구관 소계	47	0	0	46	0	1	0	0
농업연구관	25	0	0	24	0	1	0	0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보건연구관	6	0	0	6	0	0	0	0
환경연구관	7	0	0	7	0	0	0	0
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9	0	0	9	0	0	0	0
연구사 소계	198	7	0	149	11	31	0	0
학예연구사	2	1	0	0	0	1	0	0
기록연구사	4	4	0	0	0	0	0	0
공업연구사	2	2	0	0	0	0	0	0
농업연구사	78	0	0	65	0	13	0	0
녹지연구사	10	0	0	0	0	10	0	0
수의연구사	7	0	0	0	0	7	0	0
해양수산연구사	10	0	0	0	10	0	0	0
보건연구사	32	0	0	32	0	0	0	0
환경연구사	46	0	0	46	0	0	0	0
농업연구사· 해양수산연구사	1	0	0	1	0	0	0	0
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	1	0	0	1	0	0	0	0
농업연구사·환경연구사	1	0	0	1	0	0	0	0
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3	0	0	3	0	0	0	0
해양수산연구사·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	1	0	0	0	1	0	0	0
지도직 계	31	0	0	31	0	0	0	0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지도관 소계	10	0	0	10	0	0	0	0
농촌지도관	10	0	0	10	0	0	0	0
지도사 소계	21	0	0	21	0	0	0	0
농촌지도사	21	0	0	21	0	0	0	0
소방직 계	5,489	199	0	5,290	0	0	0	0
소방정	31	7	0	24	0	0	0	0
소방령	138	26	0	112	0	0	0	0
행정5급·소방령	1	1	0	0	0	0	0	0
소방경	443	29	0	414	0	0	0	0
행정6급·소방경	1	1	0	0	0	0	0	0
소방위	505	23	0	482	0	0	0	0
행정7급·소방위	1	1	0	0	0	0	0	0
소방장	753	44	0	709	0	0	0	0
소방교	1,175	24	0	1,151	0	0	0	0
소방사	2,441	43	0	2,398	0	0	0	0
경찰직 계	4	4	0	0	0	0	0	0
경감	4	4	0	0	0	0	0	0



경 상 북 도

후 령

경상북도 훈령 제1675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7,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2] 의회사무처 정원표

기관별 직급·직렬별		의회계	총무 담당관	의사 담당관	의정홍보 담당관	예산입법 담당관	정책지원 담당관	전문위원실
합 계		161	33	18	17	15	42	36
일반직계		153	31	18	17	15	42	30
2~3급	소 계	1	1					
	이사관· 부이사관	1	1					
3~4급	소 계	1	1					
	부이사관 ·서기관	1	1					
4급	소 계	10	1	1	1	1	1	5
	행정	5	1	1	1		1	1
	행정·과학 기술	5				1		4
5급	소 계	25	4	3	3	4	7	4
	행정	19	3	2	3	3	6	2
	행정·속기	1		1				
	행정·시설	4	1			1	1	1
	행정·농업 ·환경·시설	1						1
6급	소 계	61	8	5	4	4	33	7
	행정	49	5	1	2	3	33	5
	속기	2		2				
	행정·전산	3	1	1	1			
	행정·사회 복지	4		1	1	1		1
	행정·시설	1						1
	행정·공업 ·방송통신	2	2					

기관별 직급·직렬별		의회계	총무 담당관	의사 담당관	의정홍보 담당관	예산입법 담당관	정책지원 담당관	전문위원실
7급	소 계	36	8	6	6	5	1	10
	행정	25	5	2	5	5	1	7
	속기	4		4				
	운전	2	2					
	사무운영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 복지	1						1
	행정·농업 ·환경	2						2
8급	소 계	15	7	3		1		4
	행정	4	1	1				2
	속기	2		2				
	운전	3	3					
	행정·사서	1				1		
	행정·시설	1	1					
	행정·전산 ·방송통신	2	2					
	행정·농업 ·환경	2						2
9급	소 계	1	1					
	행정	1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의회계	총무 담당관	의사 담당관	의정홍보 담당관	예산입법 담당관	정책지원 담당관	전문위원실
전 문 경력관	전문경력관 소계	3			3			
	나군 소계	2			2			
	사진영상 촬영요원	2			2			
	다군 소계	1			1			
	사진영상 촬영요원	1			1			
별 정 직 계		8	2					6
4급상당	소 계	2						2
	행정·별정 (전문위원)	1						1
	행정·과학 기술·별정 (전문위원)	1						1
5급상당	소 계	4						4
	행정·별정 (전문위원)	2						2
	행정·농업 ·별정 (전문위원)	1						1
	행정·시설 ·별정(전 문위원)	1						1
6급상당	소 계	1	1					
	의장비서	1	1					
7급상당	소 계	1	1					
	의장비서	1	1					

[별표7] 경제자유구역청 정원표

직급 · 직렬별		기관별	경제자유구역청
합 계			7
일 반 직 계			7
4급	소 계		1
	부이사관		1
5급	소 계		1
	행정		1
6급	소 계		2
	행정		2
7급	소 계		3
	행정		3

[별표 8]

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표(제2조제8항 관련)

기관별	정 원		비고
	계	내역	
계	133		
대변인	8	지방서기관 1 지방행정주사 1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1 지방전산주사보 지방행정주사보 2 지방전산주사보 1 지방행정서기 2	대변인(개방형 직위) 1 뉴미디어 홍보 1 언론 모니터링 및 보도 분석 1 뉴미디어 홍보 1 정책홍보 1 홈페이지 관리 1 뉴미디어 홍보 1 사진영상촬영 및 편집 1
감사관	1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감사관(개방형 직위) 1
경제혁신추진단	1	지방행정주사보	경제정책 개발, 경제통계현황분석 1
정책기획관	1	지방행정주사보	컴퓨터 그래픽 운용 1
법무혁신담당관	2	지방행정사무관 1 지방행정주사 1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1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1
정보통신담당관	1	지방전산주사보	정보보안관제 1
행정지원과	3	지방행정주사 2 지방행정주사보 1	노사협력 1, 인권보호관 1 전문MC요원 1
재난관리과	2	지방시설주사 1 지방시설주사보 또는 1 지방방재안전주사보	시설물안전관리 1 지진연구 및 안전관리 1
새마을봉사과	1	지방행정주사	새마을 대외협력 1
회계관리과	3	지방공업주사보 2 지방방송통신서기 1	무대기계 1, 무대조명 1 공연장 음향 1

기관별	정 원		비고
	계	내역	
인재복지과	2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1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지방식품위생주사보 1	직원건강 관리 및 심리상담 1 영양사 1
대학정책과	1	지방행정주사보 1	평생학습업무 1
AI데이터과	2	지방행정주사보 1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1 지방전산주사보	통계분석처리 1 빅데이터 분석 1
기업지원과	1	지방행정주사 1	온라인마케팅 업무지원 1
민생경제과	1	지방행정주사 1	소비자행복센터 운영 1
교통정책과	1	지방행정주사 1	교통체계개선 1
외교통상과	5	지방행정사무관 1 지방행정주사 1 지방행정주사보 3	통상·교류 1 국제교류·협력 1 국제교류·협력 3
투자유치단	3	지방부이사관 1 지방서기관 또는 1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행정주사 1	공항투자본부장(개방형 직위) 1 투자유치단장(개방형 직위) 1 투자유치 1
농식품유통과	1	지방농업주사보 1	농업통상 1
기후환경정책과	1	지방환경주사보 1	지질공원 인증 및 관리 1
맑은물정책과	1	지방환경주사 1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제 1
공공의료과	2	지방보건주사 또는 1 지방간호주사 지방보건주사보 또는 1 지방간호주사보	역학조사관 1 역학조사관 1
건축디자인과	2	지방시설주사 2	건축안전 2
토지정보과	1	지방전산주사 1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화 구축 1

기관별	정 원		비고
	계	내역	
의회사무처 의정홍보담당관	3	지방행정사무관 1 지방행정주사보 2	미디어·홍보기획 1 의정홍보 1 뉴미디어 홍보 1
의회사무처 예산입법담당관	4	지방행정사무관 1 지방행정주사 2 지방행정주사보 1	입법정책연구 1 입법정책연구 1 지방자치연구 1 입법정책연구 1
의회사무처 정책지원담당관	38	지방서기관 1 지방행정사무관 4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지방행정주사 32	정책지원담당관(개방형 직위) 1 입법정책연구 4 입법정책연구 1 정책지원관 32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2	지방서기관 1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직(4급 상당) 1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1
농업기술원 총무과	1	지방보건주사보 또는 지방간호주사보 1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1
농업기술원 기획교육과	4	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 1 지방행정주사보 2 지방전산주사보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보 1	농업방송 구축운영 및 기획촬영 1 방송디자인 및 뉴미디어 홍보 1 농업방송 진행·홍보 1 농업방송 기획 및 촬영·편집 1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2	지방행정주사 1 지방행정주사보 1	교육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평가 1 교육과정 연구·개발 1
보건환경연구원	1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 1	보건환경연구원장(개방형직위) 1
소방학교	1	지방식품위생서기 1	식품위생 관리 1
환동해전략기획단	1	지방행정주사보 1	동해안 해양 및 항만정책 개발연구 1
에너지정책과	1	지방행정주사보 1	에너지정책 개발연구 1

기관별	정 원		비고
	계	내역	
독도해양정책과	3	지방해양수산주사 1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1 지방학예연구사 1 지방해양수산서기 1	선박건조 운영총괄 1 독도 역사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추진 1 정화운반선 기관분야 총괄 1
농업자원관리원 (본원)	1	지방농업서기 1	종자산업 연구·개발 1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	2	지방농업주사보 또는 1 지방농업연구사 1 지방농업연구사 1	곤충산업 연구개발 1 곤충산업 연구개발 1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1	지방수의주사보 1	도축검사 1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1	지방수의주사보 1	도축검사 1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1	지방수의주사보 1	도축검사 1
축산기술연구소	8	지방농업사무관, 1 지방수의사무관, 1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1 지방수의연구관 6 지방농업연구사 6 지방농업서기보 1	축산연구실장(개방형 직위) 1 축산연구 6 가축사양관리 1
산림환경연구원	3	지방녹지연구사 1 지방녹지연구사 1 지방녹지주사보 1	산림자원연구 1 송이버섯 연구 1 소나무재선충병 진단·방제 연구 1
서울본부	1	지방서기관 또는 1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서울본부장(개방형 직위) 1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7	지방서기관 1 지방행정사무관 1 지방행정주사 2 지방행정주사보 3	기획행정실장(개방형 직위) 1 유치2과장 1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요원 2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요원 3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271호

2026년도 경상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2026년도 경상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 2026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시군	산업단지명	유형	전체 (천㎡)	산업용지 (천㎡)	사업시행자	비고
	소계		9,645.6	6,158.0		
포항	연어양식 특화단지	농공	224.1	169.4	포항시	
포항	미남	일반	363.7	248.4	(주)동진이엔지와 5개사	
포항	영일만 특화단지	일반	1,488.7	869.6 (737.2)	포항시	
경주	남경주	일반	229.7	151.5	(주)남경주일반 산업단지 외 1개사	
경주	모서	일반	595.6	323.4	(주)모서산업단지	
경주	외동4	일반	447	298.7	(주)신용테크외 11개사	2분기
안동	풍산제2	농공	198.3	120.8	안동시	
안동	일직	일반	284	188.7	한국씨앤오테크(주)	2분기
구미	구미 장천 (당초 구미)	일반	963.2	650.5	구미도시공사	
영주	SK스페셜티 제2	일반	198.6	126.8	에스케이 스페셜티(주)	
영천	도남	일반	149.4	106.7	영천시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터	일반	1,923.1	1,173.1	상주시	
상주	상주제2	일반	643.4	444.6	상주시	
문경	산양제3	농공	121.6	86.5	문경시	
영덕	제2로하스 특화	농공	95.4	51.1	영덕군	
성주	성주3	일반	484.0	310.6	성주군	
칠곡	북삼오평	일반	1,235.8	837.6	칠곡군	

* 산업시설용지 면적 : () 복합용지 면적 제외
끝.

경상북도 고시 제2026-272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명 칭 : 토함산자연휴양림
2. 위 치 :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장항리 산599-1번지 일원
3. 면 적 : 1,211,344㎡
4. 승인일자 : 2026. 7. 8.※ 최초승인일 1991. 12. 10.
5. 사업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6. 12. 31.
6. 투자계획 : 180백만원

7. 시설변경계획 : 가로등 설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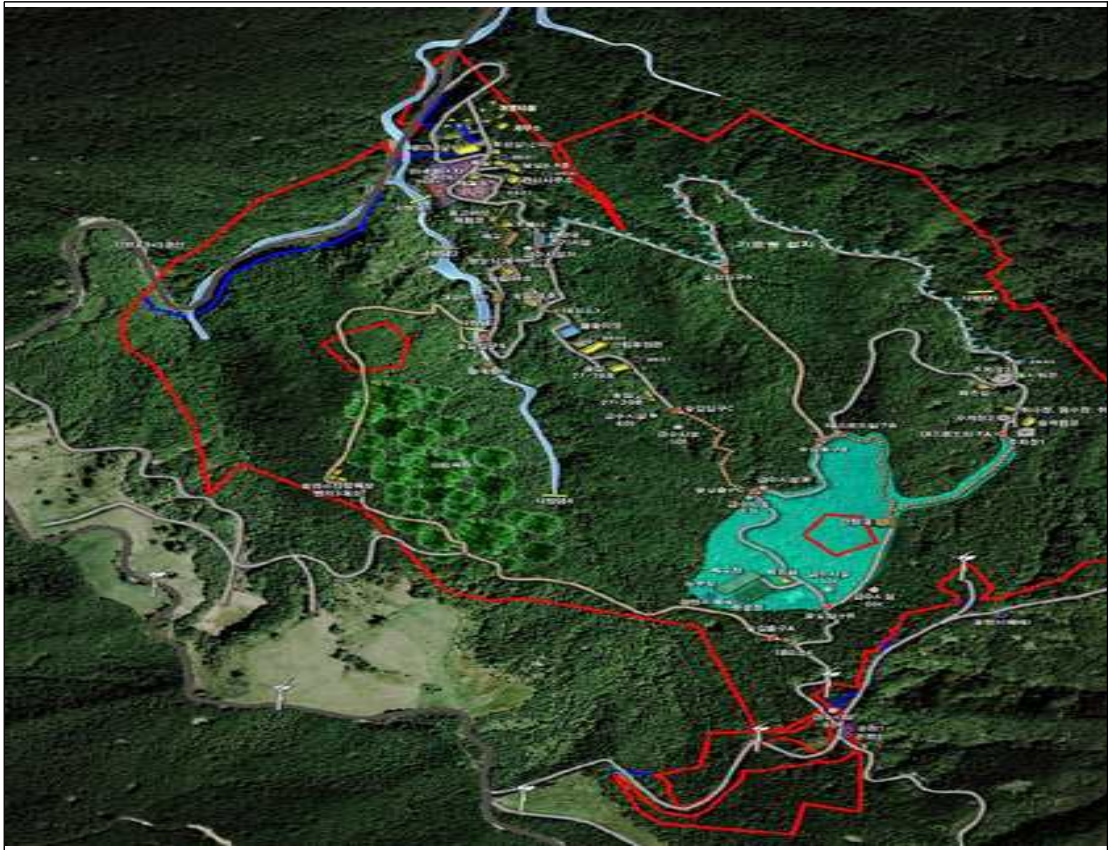
시 설 물 명	단위	시 설 승 인 내 역(기승인)			변 경 승 인 신 청 내 역			증 감		
		규모	수량	조성내역 산 지 전용면적 (연면적)	규모	수량	조성내역 산 지 전용면적 (연면적)	규모	수량	조성내역 산 지 전용면적 (연면적)
합 계				42,763.46			42,763.46			
가. 숙박시설										
○ 숲속의집(연립)	m ²	85.02	2	170.04	85.02	2	170.04	170.04		
○ 숲속의집(단독)	m ²	48.77	6	292.62	48.77	6	292.62	292.62		
○ 산림휴양관	m ²	345.6	1	345.60	345.6	1	345.60	345.60		
나. 편의시설										
○ 관리사무소	m ²	154	1	154.00	154	1	154.00	154.00		
○ 야영시설	m ²	211.21	7	3,806.0	211.21	7	3,806.0	211.21		
○ 사무소	m ²	142.56	1	417.0	142.56	1	417.0	142.56		
○ 매표소	m ²	38.79	1	38.79	38.79	1	38.79	38.79		
○ 대피소	m ²	9.9	4	39.96	9.9	4	39.96	39.96		

시 설 물 명	단위	시 설 승 인 내 역(기능인)				변 경 승 인 신 청 내 역				증 감			
		규모	수량	조성내역		규모	수량	조성내역		규모	수량	조성내역	
				산 지 전용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산 지 전용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산 지 전용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전망대	m ²	19.44	1	19.44	19.44	19.44	1	19.44	19.44				
○ 진입로	m		415				415						
○ 주차장	식		3				3						
○ 야영장	식		1	7,368			1	7,368					
○ 산림욕장	식		1	12,500			1	12,500					
다. 위생시설													
○ 취사장	m ²	14.58	2	29.16	29.16	14.58	2	29.16	29.16				
○ 화장실	m ²	24.07	3	72.22	72.22	24.07	3	72.22	72.22				
○ 오물소각장	m ²	2.93	4	11.72		2.93	4	11.72					
○ 샤워장	동		1	46.92	46.92		1	46.92	46.92				
○ 취수장, 취수시설	식		1	37.50			1	37.50					
○ 급수, 배수 시설	식		8	2,730			8	2,730					

시 설 물 명	단위	시 설 승 인 내 역(기능인)				변 경 승 인 신 청 내 역				증 감			
		규모	수량	조성내역		규모	수량	조성내역		규모	수량	조성내역	
				산 지 전용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산 지 전용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산 지 전용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정	개소		2	1,000			2	1,000					
○정화조	개소		8				8						
라. 체험교육시설													
○산책로	km		3.89				3.89						
○숲체험장	동		1	101.4	101.40		1	101.4	101.40				
○세미나실	동		1	827.09	898.56		1	827.09	898.56				
○표고버섯재배장	개소		1	400			1	400					
○조류사	m ²		1	150			1	150					
○야생화단지	m ²		1	3,000			1	3,000					
마. 체육시설													
○물놀이장	식		1	500			1	500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식		1	5,000			1	5,000					

시 설 물 명	단위	시 설 승 인 내 역(기승인)				변 정 승 인 신 청 내 역				증 감			
		규모	수량	조성내역		규모	수량	조성내역		규모	수량	조성내역	
				산 지 전용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산 지 전용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산 지 전용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바. 전기통신시설													
○ 전기시설	식		1				1						
○ 태양광발전시설	m ²		1	656			1	656					
○ 전화시설	식		1				1						
○ 가로등	개소		-				51				51		
○ 가로등점멸기	개소		-				2				2		
사. 안전시설													
○ 목교	개소		1	50			1	50					
○ 사방댐	개소		5	3,000			5	3,000					

8. 시설물종합배치도



경상북도 고시 제2026-273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26년도 산림피해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
3.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사업과 (☎054-778-38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산림피해복구사업 지정 내역서

시군	구	읍면	리동	지 번	지목	지 적 (㎡)	지정면 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사업종류	비고
								주소	성 명		
계				17필지			7,323				
청도				17필지			7,323				
청도		청도	평양	산2-1	임야	472	11		청도군	산사태복구	7.16.~20. 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 청도 평양 상리지구-평양지구
청도		청도	평양	산2-2	임야	140	29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읍지1길 38	한옥균	산사태복구	7.16.~20. 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 청도 평양 상리지구-평양지구
청도		청도	평양	산4-1	임야	1,869	41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봉로13번길 6, 5동 401호 (서동,현대아파트)	홍환근	산사태복구	7.16.~20. 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 청도 평양 상리지구-평양지구
청도		청도	평양	산4-2	임야	4,939	58	경상북도청도군 청도읍 읍지동 382	한상우	산사태복구	7.16.~20. 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 청도 평양 상리지구-평양지구
청도		청도	평양	산6	임야	238	163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읍지1길 14-1	태근수	산사태복구	7.16.~20. 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 청도 평양 상리지구-평양지구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지정면 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사업종류	비고
시군	구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성 명		
청도		청도	평양	산8	임야	27,955	119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양지길 42-113	류현석	산사태복구	7.16.~20. 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 청도 평양 상리지구-평양지구
청도		청도	평양	산8-3	임야	227	19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양지길 42-113	류현석	산사태복구	7.16.~20. 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 청도 평양 상리지구-평양지구
청도		청도	상	산44	임야	15,471	1,715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평양길 94	박진수	산사태복구	7.16.~20. 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 청도 평양 상리지구-상리지구
청도		청도	상	산45	임야	35,702	67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양지길 138	황금봉	산사태복구	7.16.~20. 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 청도 평양 상리지구-상리지구
청도		청도	상	1	임야	1,911	1,231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평양길 94	박진수	산사태복구	7.16.~20. 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 청도 평양 상리지구-상리지구
청도		청도	상	2-1	임야	546	367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가마실길 1	형석운	산사태복구	7.16.~20. 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 청도 평양 상리지구-상리지구
청도		청도	구미	산36	임야	38,479	238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구미길 55-18	김춘수	산사태복구	7.16.~20. 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 청도 구미 원리지구-구미지구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면 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사업종류	비고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청도		청도	원	산217	임야	867,853	179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원동길 304	대한 불교 조계종 적천사	산사태복구	7.16.~20. 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 청도 구미 원리지구-원리지구
청도		청도	부야	산44	임야	21,706	2,207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51길 10, 306동 1101호 (봉무동,이시아 폴리스더샵3차)	김다남	산사태복구	7.16.~20. 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 청도 부야 지구
청도		청도	부야	산44-2	임야	7,786	566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20, 101동 2202호 (청룡동, 청룡동 협성 엠파이어)	허원	산사태복구	7.16.~20. 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 청도 부야 지구
청도		청도	부야	산45	임야	38,472	2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58번길 78, 104동 1804호 (구갈동, 기흥역 더샵)	박종균	산사태복구	7.16.~20. 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 청도 부야 지구
청도		청도	부야	1427-27	하천	2,737	15		국토 교통부	산사태복구	7.16.~20. 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 청도 부야 지구

경상북도 고시 제2026-274호

「웰빙-스테이 레포츠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73-3번지 일원의 「웰빙-스테이 레포츠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개요

가. 관광단지명 : 웰빙-스테이 레포츠 관광단지

나.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73-3번지 일원

다. 지 정 면 적 : 지적분할에 따른 지적면적 변경

- 기정 : 998,192㎡

- 변경 : 997,150㎡ (감 1,042㎡)

라. 승 인 근 거 :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법 제54조

마. 사 업 비 : 125,530백만원(1단계: 46,201백만원, 2단계: 79,329백만원)

바. 사 업 기 간

- 기 정 : 1단계 - 2018년 ~ 2026년, 2단계 - 2027년 ~ 2028년

- 변경 : 1단계 - 2018년 ~ 2026년, 2단계 - 2027년 ~ 2030년

사. 사 업 시 행 자 : (주)동화레저

2.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가. 1단계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1단계				주요시설	비고
	기정		변경			
	부지면적 (㎡)	구성비 (%)	부지면적 (㎡)	구성비 (%)		
합계	350,937	100.0	372,006	100.0	-	
공공편의 시설지구	3,804	1.10	5,386	1.4	저류지	
휴양·문화 시설지구	5,032	1.4	7,143	1.9	골프장 탐방로	
운동오락 시설지구	286,653	81.7	307,956	82.9	대중제골프장(9홀)	
기타시설지구	55,448	15.8	51,521	13.8	-	
완충용녹지	55,448	15.8	51,521	13.8		

나. 2단계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2단계				주요시설	비고
	기정		변경			
	부지면적 (㎡)	구성비 (%)	부지면적 (㎡)	구성비 (%)		
합계	647,255	100.0	625,144	100.0	-	
공공편익 시설지구	34,966	5.41	34,872	5.6	관광안내소, 주차장, 도로, 배수지, 오수처리장, 저류지, 화장실	
숙박시설지구	17,360	2.68	17,360	2.8	풀빌라, 콘도미니엄, 콘도 및 컨벤션센터	
상가시설지구	1,252	0.18	1,252	0.2	향토음식점, 상가	
휴양·문화 시설지구	132,396	20.45	132,396	21.2	알파인코스터, 모험의 숲, 슈퍼슬라이드, 숲속의 집, 숲속야영장, 야외공연장, 스카이워크 전망대, 매직하우스, 힐링센터, 치유의 숲,키즈복합 문화마당	
기타시설지구	461,281	71.28	439,670	70.2	-	
원형보전녹지	419,575	64.82	397,466	63.5	-	
완충용녹지	8,183	1.26	8,183	1.3	-	
경관녹지	33,523	5.20	33,615	5.4	-	

다. 세부시설조서

- 1단계 세부시설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건축면적(㎡)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	구성비 (%)	부지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50,937	100.0	372,006	100.0	100.00	51.50	90.26	51.50	
공공 편익 시설	소 계		3,804	1.1	5,386	1.5					
	저류지	저류지2	1,475	0.4	2,172	0.6					
		저류지3	2,329	0.7	3,214	0.9					
휴양 문화 시설	소 계		5,032	1.4	7,143	2.0					
	골프장 탐방로		5,032	1.4	7,143	2.0					
운동 오락 시설	소계		286,653	81.7	307,956	82.8	100.00	51.50	90.26	51.50	
	대중제 골프장9홀		286,653	81.7	307,956	82.8	100.00	51.50	90.26	51.50	지상1층
기타 시설	소 계		55,448	15.8	51,521	13.7					
	녹지	완충용 녹지	55,448	15.8	51,521	13.7					

- 2단계 세부시설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건축면적(㎡)		비고
		부지면적 (㎡)	구성비 (%)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647,255	100.0	625,144	100.0	9,093.96	28,639.77	
공공 편의 시설	소 계	34,966	5.41	34,872	5.59	317.00	317.00	
	관광안내소	350	0.05	350	0.06	120.00	120.00	지상1층
	주차장	소계	7,350	7,350	1.18			
		주차장1	1,850	1,850	0.30			
		주차장2	2,290	2,290	0.37			
		주차장3	2,310	2,310	0.37			
		주차장4	900	900	0.14			
	도 로	23,236	3.59	23,168	3.71			
	배수지	460	0.07	460	0.07			
	오수처리장	370	0.06	370	0.06			
	저류지	소계	2,700	2,674	0.43			
		저류지1	2,700	2,674	0.43			
	화장실	소계	500	500	0.08	197.00	197.00	
		화장실1	250	250	0.04	99.00	99.00	지상1층
		화장실2	125	125	0.02	49.00	49.00	지상1층
		화장실3	125	125	0.02	49.00	49.00	지상1층

구 분		기정		변경		건축면적(㎡)		비고
		부지면적 (㎡)	구성비 (%)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연면적	
숙박 시설	소 계	17,360	2.68	17,360	2.77	5,917.67	22,199.47	
	소 계	5,946	0.92	5,946	0.95	1,625.01	5,175.04	
	폴빌라1	395	0.06	395	0.06	102.80	431.12	지하1층/ 지상3층
	폴빌라2	548	0.08	548	0.09	102.80	431.12	지하1층/ 지상3층
	폴빌라3	384	0.06	384	0.06	102.80	431.12	지하1층/ 지상3층
	폴빌라4	397	0.06	397	0.06	102.80	431.12	지하1층/ 지상3층
	폴빌라5	393	0.06	393	0.06	102.80	431.12	지하1층/ 지상3층
	폴빌라6	422	0.07	422	0.07	102.80	431.12	지하1층/ 지상3층
	폴빌라7	506	0.08	506	0.08	144.03	369.76	지하1층/ 지상2층
	폴빌라8	594	0.09	594	0.10	144.03	369.76	지하1층/ 지상2층
	폴빌라9	719	0.11	719	0.12	144.03	369.76	지하1층/ 지상2층
	폴빌라10	432	0.07	432	0.07	144.03	369.76	지하1층/ 지상2층
	폴빌라11	379	0.06	379	0.06	144.03	369.76	지하1층/ 지상2층
	폴빌라12	383	0.06	383	0.06	144.03	369.76	지하1층/ 지상2층
	폴빌라13	394	0.06	394	0.06	144.03	369.76	지하1층/ 지상2층
	소계	1,384	0.21	1,384	0.22	530.31	1,549.20	
	콘도미니엄1	453	0.07	453	0.07	176.77	516.40	지하1층/ 지상2층
	콘도미니엄2	460	0.07	460	0.07	176.77	516.40	지하1층/ 지상2층
	콘도미니엄3	471	0.07	471	0.08	176.77	516.40	지하1층/ 지상2층
	콘도 및 컨벤션센터	10,030	1.55	10,030	1.6	3,762.35	15,475.23	지하2층/ 지상4층

구 분			기정		변경		건축면적(㎡)		비고
			부지면적 (㎡)	구성비 (%)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연면적	
상가 시설	소 계		1,252	0.18	1,252	0.20	457.50	1,072.50	
	향토 음식점	소계	840	0.12	840	0.13	300.00	600.00	
		향토음식점1	420	0.06	420	0.07	150.00	300.00	지상2층
		향토음식점2	420	0.06	420	0.07	150.00	300.00	지상2층
	상 가		412	0.06	412	0.07	157.50	472.50	지상3층
휴양 문화 시설	소 계		132,396	20.45	132,396	21.17	2,401.79	5,050.80	
	알파인코스터		61,685	9.53	61,685	9.87			
	모험의 숲		24,589	3.80	24,589	3.93			
	슈퍼슬라이드		1,839	0.28	1,839	0.29			
	숲속의 집		10,037	1.55	10,037	1.61	80.00	80.00	2동, 지상1층
	숲속야영장		10,555	1.63	10,555	1.69	118.00	118.00	2동, 지상1층
	야외공연장		1,510	0.23	1,510	0.24			
	스카이워크전망대		1,146	0.18	1,146	0.18	402.25	1,044.47	지상3층
	매직하우스		2,513	0.39	2,513	0.40	752.54	1,759.33	지상3층
	힐링센터		4,040	0.62	4,040	0.65	1,000.00	2,000.00	지상2층
	치유의 숲		12,033	1.86	12,033	1.92	49.00	49.00	지상1층
	키즈복합문화마당		2,449	0.38	2,449	0.39			
기타 시설	소 계		461,281	71.28	439,264	70.27			
	녹지	원형보전 녹지	419,575	64.82	397,466	63.58			
		완충용 녹지	8,183	1.26	8,183	1.31			
		경관녹지	33,523	5.20	33,615	5.38			

라. 총투자비 (변경)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표

구 분	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1단계					2단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소계
합 계	125,530	12,210	2,790	6,671	14,100	10,430	46,201	7,815	31,356	23,046	17,112	79,329	
1. 공공편익시설지구	13,630	-	-	-	300	80	380	1,810	5,770	5,670	-	13,250	
관광안내소	120	-	-	-	-	-	-	120	-	-	-	120	
주차장	370	-	-	-	-	-	-	-	200	170	-	370	
도로	11,690	-	-	-	-	-	-	1,690	5,000	5,000	-	11,690	
배수지	230	-	-	-	-	-	-	-	100	130	-	230	
오수처리장	370	-	-	-	-	-	-	-	170	200	-	270	
저류지	650	-	-	-	300	80	380	-	200	70	-	270	
화장실	200	-	-	-	-	-	-	-	100	100	-	200	

구 분	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1단계						2단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소계	
2. 숙박시설지구	45,864	-	-	-	-	-	-	3,995	19,656	11,091	11,122	45,864	
풀빌라	11,805	-	-	-	-	-	-	754	5,206	2,923	2,922	11,805	
콘도미니엄	3,100	-	-	-	-	-	-	300	1,200	800	800	3,100	
콘도 및 컨벤션센터	30,959	-	-	-	-	-	-	2,941	13,250	7,368	7,400	30,959	
3. 상가시설지구	1,400	-	-	-	-	-	-	-	680	720	-	1,400	
향토음식점	780	-	-	-	-	-	-	-	380	400	-	780	
상가	620	-	-	-	-	-	-	-	300	320	-	620	
4. 운동·오락시설지구	26,750	-	-	6,000	12,000	8,750	26,750	-	-	-	-	-	
대중체육경기장9홀	26,750	-	-	6,000	12,000	8,750	26,750	-	-	-	-	-	
5. 휴양·문화시설지구	15,376	-	-	46	350	350	746	800	4,080	4,570	5,180	14,630	
알파인코스터	2,070	-	-	-	-	-	-	-	700	700	670	2,070	

구 분	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1단계						2단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소계
모험의 숲	760	-	-	-	-	-	-	-	380	200	180	760	
슈퍼슬라이드	400	-	-	-	-	-	-	100	100	100	100	400	
숲속의 집	2010	-	-	-	-	-	-	-	600	600	810	2,010	
숲속아영장	2140	-	-	-	-	-	-	-	650	650	840	2,140	
아와공영장	460	-	-	-	-	-	-	-	-	200	260	460	
스카이워크전망대	1360	-	-	-	-	-	-	300	350	350	360	1,360	
매직하우스	2290	-	-	-	-	-	-	400	600	600	690	2,290	
힐링센터	2600	-	-	-	-	-	-	-	600	1,000	1,000	2,600	
치유의 숲	370	-	-	-	-	-	-	-	100	100	170	370	
골프장 탐방로	746	-	-	46	350	350	746	-	-	-	-	-	
키즈북화문화미당	170	-	-	-	-	-	-	-	-	70	100	170	

구 분	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1단계						2단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소계	
6. 녹지용지	2,510	-	-	125	950	250	1,325	210	170	495	310	1,185	
	원형보전녹지	170	-	-	-	-	-	-	-	90	80	170	
	완충용녹지	1,520	-	125	950	250	1,325	-	-	195	-	195	
	경관녹지	820	-	-	-	-	-	210	170	210	230	820	
기 타	20,000	12,210	2,790	500	500	1,000	17,000	1,000	1,000	500	500	3,000	
토지매입	12,000	10,530	1,470	-	-	-	12,000	-	-	-	-	-	
기타비용(운영비)	8,000	1,680	1,320	500	500	1,000	5,000	1,000	1,000	500	500	3,000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1 참조

4.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붙임 2 참조

5. 관광단지 조성계획 도서, 지형도면 고시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6. 관제도서의 게재는 생략하고 경상북도 관광정책과(☎ 054-880-3190), 칠곡군 문화관광과(☎ 054-979-60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연차별 투자계획표(단위 : 백만원)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군	읍면	리	산	본	- 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주소	관리의 명세	성명	
합계	기정 59필지 변경 84필지							1,354,181	1,005,373	998,192	997,150						
1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50 - 2	답	352	352	352		정인식	달성군 다사면 문양동 620				
												정달식	달성군 다사면 문양동 596				
												정우식	달성군 다사면 문양동 596				
												정수동	달성군 다사면 문양동 596				
2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51		임	258	258	258	258	(주)동화레져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동47가)	수탁자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3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496		임	1,154	1,154	1,154	1,154	(주)동화레져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동47가)	수탁자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4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500		전	714	714	714	714	(주)동화레져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동47가)	수탁자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5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596		임	2,764	2,764	2,764	2,764	(주)동화레져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동47가)	수탁자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군	읍면	리	산	본	- 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권리의 명세	성명	
6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00		토	509	509	509	509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7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7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01		임	3,230	3,230	3,230	3,230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7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8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02		임	784	784	784	784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7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9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03		임	360	360	360	360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7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0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04		임	625	625	625	625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7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1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05		전	3,213	3,213	3,213	3,213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7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2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06		전	1,762	1,762	1,762	1,762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7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3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16		임	3,491	3,491	3,491	3,491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7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4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17		구	354	354	354	354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7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5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18		임	2,899	2,899	2,899	2,899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7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군	읍면	리		산	본	-		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관리의 명세	
16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19			456	456	456	456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7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20			76	76	76	76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8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21			2,377	526	2,377	526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9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21	-	1		1,851		1,851					621번지 지적분할
20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22			506	88	506	88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21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22	-	1		418		418					622번지 지적분할
22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23			1,008	1,008	1,008	1,008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23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29			255	255	255	255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24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37			1,283	1,283	1,283	1,283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25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66			182	182	182	182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26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67			774	774	774	774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 고
	군	읍면	리		산	본	-		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관리의 명세	성명	
27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70			1,154	1,154	1,154	1,154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28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71			1,471	1,471	1,471	1,471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29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72			1,507	1,507	1,507	1,507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30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672	-	1	1,025	1,025	1,025	1,025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952	-	1	357,929		10,113	0						
31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952	-	14		2,258		2,258	국(기획 재정부)	-			952-1번지 지적분할	
32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952	-	15		1,156		1,156	국(기획 재정부)	-			952-1번지 지적분할	
33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952	-	16		3,598		3,598	국(기획 재정부)	-			952-1번지 지적분할	
34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952	-	17		1,847		1,847	국(기획 재정부)	-			952-1번지 지적분할	
25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952	-	18		227		227	국(기획 재정부)	-			952-1번지 지적분할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961			6,040	5,696	310	0					지적분할 후 제척	
36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961	-	1		211		211	국(기획 재정부)	-			961번지 지적분할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군	읍면	리	산	본	-		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관리의 명세	
37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57	-	1	임	15,769	5,373	15,769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산57-1번지 지적분할
38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57	-	4	임		10,396	10,396					산57-1번지 지적분할
39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57	-	2	임	9,831	9,831	9,831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40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0	-	1	임	27,670	3,910	27,670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41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0	-	3	임		1,141	1,141					산60-1번지 지적분할
42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0	-	4	임		3,759	3,759					산60-1번지 지적분할
43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0	-	5	임		18,860	18,860					산60-1번지 지적분할
44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0	-	2	임	21,917	14,369	21,917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45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0	-	6	임		7,548	7,548					산60-2번지 지적분할
46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1			임	21,422	243	21,422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47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1	-	1	임		21,179	21,179					산61번지 지적분할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 고
	군	읍면	리	산	본	-	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관리의 명세	성명	
48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2			임	22,612	7,863	22,612	7,863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49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2	-	1	임		14,749		14,749					산62번지 지적분할
50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3			임	23,802	4,192	23,802	4,192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51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3	-	1	임		19,610		19,610					산63번지 지적분할
52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4			임	11,107	3,641	11,107	3,641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53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4	-	1	임		7,466		7,466					산64번지 지적분할
54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5			임	10,314	68	10,314	68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55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5	-	1	임		10,246		10,246					산65번지 지적분할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6			임	137,257	706	136,482	0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지적분할 후 제척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6	-	1	임		85		0					지적분할 후 제척
56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6	-	2	임		69,507		69,507					산66번지 지적분할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군	읍면	리	산	본	-	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관리의 명세	성명	
57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66	-	3		67,279		67,279					신66번지 지적분할
58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0	-	1	73,459	73,459	73,459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7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59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0	-	3	127,231	127,231	127,231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7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60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0	-	4	6,873	6,873	6,873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7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61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1			1,190	1,190	1,190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7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62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3	-	3	94,840	94,840	94,840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7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63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3	-	5	26,102	26,102	26,102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7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64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4	-	3	81,574	70,647	81,574	70,647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7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65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4	-	13		10,927		10,927					산74-3번지 지적분할
66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5			28,959	8,135	28,959	8,135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7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67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5	-	1		20,824		20,824					산75번지 지적분할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군	읍면	리	산	본	-	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관리의 명세	성명	
68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6	-	1	임	108,349	30,319	108,052	30,319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6	-	6	임		570		0					지적분할 후 제척
69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6	-	7	임		5,277		5,277					산76-1번지 지적분할
70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6	-	8	임		72,183		72,183					산76-1번지 지적분할
71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6	-	2	임	21,322	3,865	21,322	3,865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72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6	-	9	임		5,097		5,097					산76-2번지 지적분할
73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6	-	10	임		12,360		12,360					산76-2번지 지적분할
74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6	-	3	임	30,945	7,644	30,945	7,644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75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6	-	11	임		23,301		23,301					산76-11번지 지적분할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9	-		임	51,570	1,166	50,308	0	(주)동화 레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729(동인 동4가)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지적분할 후 제척
76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9	-	1	임		39,659		39,659					산79번지 지적분할
77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79	-	2	임		10,745		10,745					산79번지 지적분할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군	읍면	리	산	본	-	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권리의 명세	성명	
78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103				132	132	132	132	국(기획재정부)	-				
79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104				132	132	132	132	국(기획재정부)	-				
80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109				331	331	331	331	국(기획재정부)	-				
81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110				132	132	132	132	국(기획재정부)	-				
82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111				132	132	132	132	국(기획재정부)	-				
83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112				331	331	331	331	국(기획재정부)	-				
84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 113				364	212	255	212	국(농림축산식품부)	-				

(붙임 2)

「웰빙-스테이 레포츠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칠곡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있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450,970,000.0	-	450,970,000.0	100.00	
도시지역		148,865,952.0	-	148,865,952.0	33.0	
비도시지역		302,104,048.0	-	302,104,048.0	67.0	
관리지역	소계	124,554,371.9	-	124,554,371.9	27.6	
	관리지역	490.0	-	490.0	0.0	
	보전관리지역	53,723,726.0	증)1,042.0	53,724,768.0	11.9	
	생산관리지역	9,897,204.0	-	9,897,204.0	2.2	
	계획관리지역	60,932,951.9	감)1,042.0	60,931,909.9	13.5	
농림지역		140,184,384.1	-	140,184,384.1	31.1	
자연환경보전지역		37,365,292.0	-	37,365,292.0	8.3	

주 : 기정은 경상북도 고시 제2026-253호(2026. 06. 29) 기준임

나.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가	기산면 노석리 산76-1	계획 관리지역	-	998,192	997,150	100% 이하	·지적 분할에 따른 지적면적 정정으로 인한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기1	웰빙-스테이 레포츠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	기산면 노석리 산73-3번지 일원	998,192	감) 1042	997,15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기정(㎡)	증감(㎡)	변경(㎡)	
기1	웰빙-스테이 레포츠 관광단지	998,192	감)1,042	997,150	· 지적 분할에 따른 지적 면적정정으 로 인한 변경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숙박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17,360	-	17,360	
A1-1	A1	5,946	노석리 산70-3	1,708	숙박시설지구 (풀빌라)
A1-2				1,860	
A1-3				790	
A1-4				1,588	
A2	A2	1,384	노석리 산74-3	1,384	숙박시설지구 (콘도미니엄)
A3	A3	10,030	노석리 산73-3 일원	10,030	숙박시설지구 (콘도 및 컨벤션센터)

2) 상가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1,252	-	1,252	
B1	B1	840	노석리 산73-3	840	상가시설지구 (향토음식점)
B2	B2	412	노석리 산70-3	412	상가시설지구 (상가)

3) 휴양·문화시설용지(변경있음)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증감	변경	
계		139,539	-	137,428	증)2,111	139,539	
C1	C1	61,685	노석리 산70-1 일원	61,685	-	61,685	휴양/문화시설지구(알파인코스터)
C2	C2	24,589	노석리 산70-3 일원	24,589	-	24,589	휴양/문화시설지구(모험의 숲)
C3-1	C3	1,839	노석리 산70-3 일원	732	-	732	휴양/문화시설지구(슈퍼슬라이드)
C3-2				1,107	-	1,107	
C4	C4	10,037	노석리 산70-3 일원	10,037	-	10,037	휴양/문화시설지구(숲속의 집)
C5	C5	10,555	노석리 산70-3 일원	10,555	-	10,555	휴양/문화시설지구(숲속야영장)
C6	C6	1,510	노석리 산70-3 일원	1,510	-	1,510	휴양/문화시설지구(야외공연장)
C7	C7	1,146	노석리 산70-1 일원	1,146	-	1,146	휴양/문화시설지구 (스카이워크전망대)
C8	C8	2,513	노석리 산70-3 일원	2,513	-	2,513	휴양/문화시설지구(매직하우스)
C9	C9	4,040	노석리 산73-5	4,040	-	4,040	휴양/문화시설지구(힐링센터)
C10	C10	12,033	노석리 산74-3 일원	12,033	-	12,033	휴양/문화시설지구(치유의 숲)
C11	C11	7,143	노석리 산66 일원	5,032	증)2,111	7,143	휴양/문화시설지구 (골프장 탐방로)
C12	C12	2,449	노석리 산73-3 일원	2,449	-	2,449	휴양/문화시설지구 (키즈복합문화마당)

4) 운동오락시설용지(변경있음)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증감	변경	
계		307,956		286,653	증)21,303	307,956	
D1	D1	307,956	노석리 산76-1 일원	286,653	증)21,303	307,956	운동/오락시설지구 (대중골프장 9홀)

5) 공공편익시설용지(변경있음)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증감	변경		
계		40,258		38,770	증)1,488	40,258		
E1	E1		350	노석리 산73-3	350	-	350	관광안내소
E2-1	E2	7,350	노석리 산73-3	1,850	-	1,850	주차장	
E2-2			노석리 산70-4 일원	2,290	-	2,290		
E2-3			노석리 산73-3 일원	2,310	-	2,310		
E2-4			노석리 산73-3	900	-	900		
E3	E3		460	노석리 산73-3	460	-	460	배수지
E4	E4		370	노석리 산73-5	370	-	370	오수처리장
E5-1	E5	8,060	노석리 산73-5 일원	2,700	감)26	2,674	저류지	
E5-2			노석리 산76-1 일원	1,475	증)697	2,172		
E5-3			노석리 산74-3 일원	2,329	증)885	3,214		
E6-1	E6	500	노석리 산70-4	250	-	250	화장실	
E6-2			노석리 산70-3	125	-	125		
E6-3			노석리 산70-3	125	-	125		
E7	E7		23,168	노석리 산73-3 일원	23,236	감)68	23,168	도로

6) 녹지용지(변경있음)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증감		변경
계			490,785		516,729	감)25,944	490,785	
F1	F1		397,466	노석리 산73-3 일원	419,575	감)22,109	397,466	원형보전녹지
F2-1	F2	1	59,704	노석리 산66 일원	25,576	감)1,557	24,019	조성녹지(완충용녹지)
F2-2		2		노석리 산76-1 일원	29,872	감)2,370	27,502	
F2-3		3		노석리 산 70-1	8,183	-	8,183	
F3	F3		33,615	노석리 산73-3 일원	33,523	증)92	33,615	조성녹지(경관녹지)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1) 숙박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1 (A1-1~4)	노석리 산70-3 (풀빌라)	용도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3층 이하
		배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자연친화적 색채를 권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2	노석리 산74-3 (콘도미니엄)	용도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2층 이하
		배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자연친화적 색채를 권장
A3	노석리 산73-3 (콘도 및 컨벤션센터)	용도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및 나목,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15호 숙박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자연친화적 색채를 권장

2) 상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B1	노석리 산73-3 (향토음식점)	용도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및 나목,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2층 이하
		배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자연친화적 색채를 권장
B2	노석리 산73-3 일원 (상가)	용도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및 나목,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3층 이하
		배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자연친화적 색채를 권장

3) 휴양·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C1~C12	노석리 산73-3 일원 (휴양/문화 시설)	용도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목 및 라목,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12호 수련시설 중 라목 및 제29호 야영장 시설, 제27호 관광휴게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3층 이하
		배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자연친화적 색채를 권장

4) 운동오락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D1	노석리 산76-1 일원 (대중골프장 9홀)	용도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다목 운동장 중 골프장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10% 이하
		용적률		10% 이하
		높이		1층 이하
		배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자연친화적 색채를 권장

5) 공공편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E1	노석리 산73-5 일원 (관광안내소)	용도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이	1층 이하	
		배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자연친화적 색채를 권장	
E2 (E2-1~4)	노석리 산73-3 일원 (주차장)	용도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주차장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10% 이하	
		용적률	10% 이하	
		높이	1층 이하	
		배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자연친화적 색채를 권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E3	노석리 산73-3 일원 (배수지)	용도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급수 및 배수와 관련된 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10% 이하
		용적률		10% 이하
		높이		1층 이하
		배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E4	노석리 산73-5 일원 (오수처리장)	용도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10% 이하
		용적률		10% 이하
		높이		1층 이하
		배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E4	노석리 산73-5 일원 (오수처리장)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자연친화적 색채를 권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E6 (E6-1~3)	노석리 산70-3 일원 (화장실)	용도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이	1층 이하
		배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자연친화적 색채를 권장

다.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전지역	교통처리계획	· 개별시설 진·출입은 연접 도로 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을 권장 · 교통처리계획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름

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전지역	담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은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간판 및 옥외광고물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은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지 않은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에 따름

경상북도 고시 제2026-275호

기일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시행한 기일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완료되어 같은 법 제114조에 의거 준공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노후 및 파손으로 기능 저하 및 재해 우려가 있는 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인의 영농편익에 기여

2. 사업내용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일원
- 수혜면적 : 30.0ha
- 사업개요 : 제방그라우팅L=107m, 사통 및 복통 보수

3. 사 업 비 : 1,403백만원

4. 사업기간 : 2024. 12. ~ 2025. 12.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

6.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054-720-7018)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6-276호

유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시행한 유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완료되어 같은 법 제114조에 의거 준공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노후 및 파손으로 기능 저하 및 재해 우려가 있는 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인의 영농편익에 기여

2. 사업내용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일원
- 수혜면적 : 250.0ha
- 사업개요 : 제방그라우팅 L=533m, 물넘이 그라우팅 L=180m

3. 사 업 비 : 8,592백만원

4. 사업기간 : 2023. 5. ~ 2025. 12.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

6.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054-720-7018)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6-277호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행정대상 및 처분내용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사항	위반내용	비 고
(주)세운건설	박○호	경북-주택2010-0013	경고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누락·지연신고(대표자)	
(주)에이치디건설	홍○현	경북-주택2015-0009	경고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대건주택건설	윤○수	경북-주택2020-0032	경고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진용	오○복	경북-대지2021-0024	경고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씨엔비네트웍스	최○현	경북-주택2021-0025	경고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씨엔아이제이	문○대	경북-주택2023-0008	경고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태광산업개발	고○숙	경북-주택2025-0004	경고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변경신고지연(상호,대표자)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사항	위반내용	비 고
(주)화산종합건설	김○권	경북-주택2004-0001	경고	변경신고지연(대표자)	
(주)동산이앤씨	최○곤	경북-대지2020-0020	경고	변경신고지연(대표자)	
(주)동호이앤씨	김○훈	경북-주택2024-0010	경고	변경신고지연(기술인)	
(주)티엘건설	김○현	경북-주택2022-0018	경고	변경신고지연(대표자, 소재지)	
일진건설(주)	하○규	경북-주대2015-0067	경고	변경신고지연(소재지)	
(주)엘에이치주택건설	김○석	경북-주택2018-0008	경고	변경신고지연(대표자)	
케이비아이건설(주)	진○우 외 1	경북-주택2000-0012	경고	변경신고지연(대표자)	
(주)유성건설	김○형 외 1	경북-주택2000-0014	영업정지 1개월 (‘26.7.10.~’26.8.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우진건설(주)	권○원 외 1	경북-주대2004-0017	영업정지 1개월 (‘26.7.10.~’26.8.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미래하우테크	이○리 외 1	경북-주택2009-0008	영업정지 1개월 (‘26.7.10.~’26.8.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세주건설	성○관	경북-주택2015-0043	영업정지 1개월 (‘26.7.10.~’26.8.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태훈종합건설	노○란	경북-주택2017-0002	영업정지 1개월 (‘26.7.10.~’26.8.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한창디앤씨	한○현	경북-대지2019-0002	영업정지 1개월 (‘26.7.10.~’26.8.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상동에이치디에스	우○균	경북-주택2020-0010	영업정지 1개월 (‘26.7.10.~’26.8.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더라운	정○현	경북-주택2020-0021	영업정지 1개월 (‘26.7.10.~’26.8.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시형토건(주)	손○연	경북-대지2020-0024	영업정지 1개월 (‘26.7.10.~’26.8.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대성빌리사움	최○혁	경북-주택2020-0034	영업정지 1개월 (‘26.7.10.~’26.8.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디오산업개발	박○정	경북-주택2021-0004	영업정지 1개월 (‘26.7.10.~’26.8.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나경건설(주)	석○진	경북-주택2021-0026	영업정지 1개월 (‘26.7.10.~’26.8.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사항	위반내용	비 고
(주)가온건설산업	안○현	경북-주택2021-0035	영업정지 1개월 (‘26.7.10.~’26.8.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제이에스종합건설	구○교	경북-주택2022-0004	영업정지 1개월 (‘26.7.10.~’26.8.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바른	조○	경북-주택2022-0022	영업정지 1개월 (‘26.7.10.~’26.8.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누락·지연신고(대표자)	
(주)써밋엔드파트너스	남○복	경북-주택2022-0026	영업정지 1개월 (‘26.7.10.~’26.8.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금린	정○용	경북-주택2023-0006	영업정지 1개월 (‘26.7.10.~’26.8.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동신종합건설(주)	신○근	경북-주택2006-0015	영업정지 1.5개월 (‘26.7.10.~’26.8.24.)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세주개발	손○주	경북-주택2017-0014	영업정지 1.5개월 (‘26.7.10.~’26.8.24.)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민주	강○주	경북-대지2017-0037	영업정지 1.5개월 (‘26.7.10.~’26.8.24.)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서진건설	이○영	경북-주택2018-0010	영업정지 1.5개월 (‘26.7.10.~’26.8.24.)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도시개발	최○주	경북-주택2019-0004	영업정지 1.5개월 (‘26.7.10.~’26.8.24.)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대성개발(주)	김○욱	경북-대지2019-0010	영업정지 1.5개월 (‘26.7.10.~’26.8.24.)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장한주택건설	박○조	경북-주택2021-0020	영업정지 1.5개월 (‘26.7.10.~’26.8.24.)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도시의꿈	장○수	경북-주택2021-0027	영업정지 1.5개월 (‘26.7.10.~’26.8.24.)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제일건설	김○호	경북-주택1988-0003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성림종합건설	김○인	경북-주택1989-0003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세현주택	김○남	경북-주택1990-0003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덕흥종합건설(주)	김○택	경북-주택1995-0002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신영	황○익	경북-주택1998-0001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로얄(주)	조○수	경북-주대1998-0002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사항	위반내용	비 고
대성건설	이○대	경북-주택1999-0003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방주주택건설	김○옥	경북-주택1999-0012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굿타임종합토건(주)	조○현	경북-주택1999-0016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형산주택(주)	김○동	경북-주택2001-0004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토투개발	편○식	경북-주택2002-0013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도시건설(주)	차○섭	경북-주대2002-0016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좋은세상주택건설(주)	김○문	경북-주택2003-0012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하늘종합건설(주)	권○진	경북-주대2003-0029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예공	이○희	경북-주택2004-0008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승민종합건설	이○연	경북-주택2004-0015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동영건설	천○성	경북-주택2004-0018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해뜰건설(주)	이○웅	경북-주택2006-0005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진솔씨앤디	박○규	경북-주택2006-0016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메이저산업(주)	황○윤	경북-주택2007-0023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현주건설(주)	김○열	경북-주택2007-0026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현주건설(주)	하○홍	경북-주택2007-0027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동참	이○형	경북-주택2008-0003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범소산업개발	서○도	경북-주택2010-0004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나훈종합건설	김○중	경북-주택2011-0040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사항	위반내용	비 고
(주)삼영종합건설	박○택	경북-주택2012-0006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해성종합건설	장○준	경북-주택2012-0022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우일건설(주)	황○관	경북-대지2014-0018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요원	김○민	경북-대지2015-0039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시호	김○호	경북-주택2015-0035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중흥개발	김○관	경북-주택2015-0050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미르개발(주)	정○영	경북-주택2015-0057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서림	임○춘	경북-주대2015-0066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이화건설	홍○일	경북-주택2015-0068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에셀건설	반○셀	경북-주택2016-0007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대원홀딩스	백○옥	경북-주택2016-0021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일성건설(주)	정○순	경북-대지2016-0024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월성산업(주)	김○형	경북-주택2017-0007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경운건설	김○도	경북-주대2019-0017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청명	원○영	경북-대지2020-0005	영업정지 2개월 (‘26.7.10.~’26.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케이플러스개발	김○혜	경북-주택2024-0009	영업정지 3개월 (‘26.7.10.~’26.10.9.)	등록기준미달(기술인)	
(주)상일건설	배○현	경북-주택2007-0008	영업정지 3개월 (‘26.7.10.~’26.10.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	
(주)위더스	권○우	경북-주택2015-0014	영업정지 3개월 (‘26.7.10.~’26.10.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	
(주)포시즌	정○창	경북-주택2016-0012	영업정지 3개월 (‘26.7.10.~’26.10.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사항	위반내용	비 고
대산주택건설(주)	지○도	경북-주택2016-0023	영업정지 3개월 (‘26.7.10.~’26.10.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	
주영주택	천○동	경북-주택2020-0019	영업정지 3개월 (‘26.7.10.~’26.10.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	
(주)양남택지개발	김○훈	경북-대지2020-0031	영업정지 3개월 (‘26.7.10.~’26.10.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	
(주)엔아이씨	권○석	경북-주택2022-0025	영업정지 3개월 (‘26.7.10.~’26.10.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	
(주)중앙주택개발	정○조	경북-주택2024-0006	영업정지 3개월 (‘26.7.10.~’26.10.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	
(주)로하스	조○근	경북-주택2025-0002	영업정지 3개월 (‘26.7.10.~’26.10.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	
(주)에이치에스디벨롭	김○민	경북-주택2023-0002	영업정지 3개월 (‘26.7.10.~’26.10.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	
(주)피케이산업	김○태	경북-대지2024-0005	영업정지 3개월 (‘26.7.10.~’26.10.9.)	등록기준미달(기술인)	
(주)거산개발	정○옥	경북-대지2022-0020	영업정지 3개월 (‘26.7.10.~’26.10.9.)	변경신고지연(대표자), 등록기준미달(기술인)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우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1374호

경상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소방청 119항공대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된후속조치로 직제 개편 후 변경된 기관명과 조직명, 직책명으로 현행화하고, “항공기 사고 조사 단과 조종사, 정비사 공중자격 심의 위원회” 구성을 현행화하여 반영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직명 변경, 주요 직책명 변경) 경상북도 119특수대응단, 경상북도 119항공대로 기관명칭 개정
 - 이에 따른 기관장 및 부서장 명칭을 119특수대응단장, 119항공대장으로 변경
 - “팀”을 “실”로 변경하고 “팀장”을 “실장”으로 변경
-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 항공대 업무, 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별표 및 별지 서식
 - 소방청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준용하고 경상북도 119항공대 운영규정에서 해당 항목 삭제
 - 별표, 별지서식 소방청 119항공대 운영 규정 중복에 따른 삭제
- (항공기 사고 조사단 구성 변경)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책명으로 반영
 - 위원장 직책“119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변경
 - 직제 변경에 따른 위원 및 간사 재검토 반영
- (조종사, 정비사 공중자격 심의위원회 구성변경) 직제 변경에 따른 위원구성 재검토 반영
 - 변경된 직책명 반영, 상급기관 위원 재검토하여 개정

3. 개정규칙안: 붙임#1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경북119항공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우) 37527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길86번길 19-59 119항공대

전화: 054-880-6133, Fax: 054-256-9121, 이메일: pastbird@korea.kr

붙임#1

경상북도 규칙 제 호

경상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상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을 “**경상북도119항공대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7조까지, 제19조 및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를 “**제19조 및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위임된 119항공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 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운항통제관**”을 “**119특수대응단 운항통제관**”으로, “**119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항팀, 정비팀 및 구조구급팀을 운영하고, 별표에 따라**”를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로, “**팀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앞의 “**제3장 항공기사고 조사 및 처리**”를 삭제한다.

제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항공기 사고 조사 및 처리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을 “(119항공기 사고 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를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로,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을 “사고 수습을 위하여 119특수 대응단에 119항공기 사고 조사단”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을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으로, “항공기사고에”를 “항공기 사고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19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5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민간기관을 포함한다)”를 “(민간포함)”으로, “항공기사고”를 “항공기 사고”로,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운영지원과장
2. 항공대장
3. 항공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조종사 1명, 정비사 1명, 구조·구급대원 1명)
5. 간사는 행정지원담당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를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조정 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파악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를 “파악하여”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사고조사”를 “사고 조사”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8조) 중 “**사고수습을**”을 “**사고 수습을**”로 한다.

제9조 앞의 “**제4장 자격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자격심의위원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을 “(**조종사·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대장**”을 “**행정지원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본부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행정과장, 구조구급과장, 119특수구조단장, 특수재난대책팀장 및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 인사부서 팀장, 감사부서 팀장, 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장, 항공대장, 위원장**”으로, “**1명 및 항공정비사**”를 “**1명, 정비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항공기사고**”를 “**항공기 사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고위험**”을 “**사고 위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중근무**”를 “**공중 근무**”로 한다.

① **조종사·정비사의 자격 심의를 위해 119특수대응단에 조종사·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둔다.**

제9조(종전의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청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u>경상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u>	<u>경상북도119항공대 운영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운영 및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19조 및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위임된 119항공대----- ----- --.
제2장 <u>항공구조구급대</u>	제2장 <u>119항공대 운영</u>
제2조(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u>운항통제관</u> (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u>119특수구조단장</u> 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 ----- ----- <u>119특수대응단</u> <u>운항통제관</u> ----- 1 <u>19특수대응단장</u> -----.
② <u>항공구조구급대</u> (이하 “항공대”라 한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	② <u>119항공대</u> ----- ----- -----.
③ 항공대에는 <u>운항팀</u> , <u>정비팀</u> 및 <u>구조구급팀</u> 을 운영하고, <u>별표</u> 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u>팀장</u> 이 총괄하도록 한다.	③ ----- <u>운항실</u> , <u>정비실</u> 및 <u>구조구급실</u> 을 운영하고, ----- ----- <u>실장</u> -----.

현행	개정안
제3조(업무)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 한 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을 포함한 다) 2. 화재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소방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운반 6. 방역 또는 방제업무 지원 7. 그 밖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8. 도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항공지원 9.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	〈삭제〉
제4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① 기장 및 부 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장 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 나.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감독 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 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 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 고 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운항 가능 여부 판단	〈삭제〉

현행	개 정 안
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안전장애 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의 관 련 기관에의 보고 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 을 확인한 후 항공기 운항 2. 부기장 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 보좌 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 시 기장의 역할 수행 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제3장 항공기사고 조사 및 처리	〈삭제〉
〈신설〉	제3장 항공기 사고 조사 및 처리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119항공기 사고 조사단) ① ----- -----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 ----- 사고 수습을 위하여 119특수대응단에 119항공기 사고 조사단 ----- 「항공· 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 항 ---- 항공기 사고에 ----- -----.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	② ----- 1 19특수대응단장-----.
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③ ----- ----- --.

현행	개 정 안
〈신설〉	1. 운영지원과장
1. 항공대장	2. 항공대장
2. 특수재난대책팀장	〈삭제〉
3.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중 단	〈삭제〉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 기관(민간기관	4. -----(민간포함)
을 포함한다)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사	----- 항공기 사고
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장	----- 위
이 위촉하는 사람	촉하는 사람 1명
〈신설〉	5. 간사는 행정지원담당으로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사고시의 긴급조치) ① 항공대장은 항	제4조(사고시의 긴급조치) ① -----
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	-----
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	-----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	조정본부-----
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④ -----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	----- 파악
악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소방본부장에게	하여 -----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사고의 경	-----.
우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	-----
보한다.	-.

현행	개 정 안
제7조(조사 보고서 제출 등) ① 단장은 <u>사고</u> 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 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과 경 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 보고서 제출 등) ① ---- <u>사고</u> <u>조사</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고의 수습) 소방본부장은 <u>사고수습</u> 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며 유가족을 지원한다.	제6조(사고의 수습) ----- <u>사고 수습</u> 을 ----- -----.
제4장 자격심의위원회 <신설>	<삭제> 제4장 자격심의위원회
제9조(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 운 영) ① 조종사·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소방본부에 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7조(조종사·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 ① 조종사·정비사의 자격 심의를 위해 11 9특수대응단에 조종사·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를 둔다.
②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간사는 <u>항공대장</u> 이 된다.	② ----- ----- <u>행정지원담당</u> --.
1. 위원장: <u>소방본부장</u>	1. ---- <u>119특수대응단장</u>
2. 위원(6명): 소방행정과장, 구조구급과장, 1 <u>19특수구조단장</u> , 특수재난대책팀장 및 <u>소방본부장이</u> 선임한 위원 2명(조종사 <u>1명 및 항공정비사 1명</u>)	2. ----- <u>소방본부 인사부서 팀장, 감사부</u> <u>서 팀장, 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장, 항</u> <u>공대장, 위원장</u> ----- - <u>1명, 정비사</u> -----
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u>항공기사고</u> 및 준 사고를 일으킨 사람	1. ----- <u>항공기 사고</u> --- -----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u>사고</u> <u>위험</u> 을 초래한 사람	2. ----- <u>사고</u> <u>위험</u> -----

현행	개 정 안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신체·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u>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u> <u>람</u>	4. ----- <u>공중 근무</u> ----- --
제10조 (생략)	제8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신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u>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청 「119</u> <u>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u>
제11조(처리기준) <u>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u> <u>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u> <u>심의결과 신체·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u> <u>로 자격정지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u> <u>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u> <u>할 수 있다.</u>	제9조(처리기준) <u>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u> <u>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u> <u>심의결과 신체·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u> <u>로 자격정지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u> <u>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u> <u>할 수 있다.</u>

경상북도 공고 제2026-1384호

대하리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하리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 및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해복구사업

나. 명 칭 : 대하리천 재해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상북도지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사 업 명	위 치			사 업 기간		사 업 량	비고
	시 군	읍면동	리	착공일 (예정일)	준공일 (예정일)		
대하리천 재해복구사업	문경	산북	창구 ~ 대하	2024. 1. 31.	2026. 12. 31.	· 축제및호안 L=6.64km · 교량공 2개소 · 부대공 1식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 착수예정일 : 2024. 1. 31.

나. 사업 준공(변경)예정일 : 2026. 12. 31.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참조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청 수자원관리과(054-880-407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대하리천 재해복구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계	총 252 필지			922,256	95,548						
1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362	천	12,892	1,533	국(국토 교통부)					
2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178-3 (178)	답	2,844	1,267	김*열	부산광역시 수영구 좌수영로 ****, ****동 ****호 (망미동, 센텀수영강변*차 e-편한세상)				
3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181-4 (181-1)	임	383	159	박*규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				
4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181-5 (181-2)	답	920	48	이*자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윗호암길 ***-				
5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334-3 (334-2)	답	778	75	이*자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윗호암길 ***-				
6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335-3 (335-1)	답	1,071	2	이*자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윗호암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7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335-2	천	975	975	이*자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윗호암길 ***				
8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349	구	34,254	20	국(농림축 산식품부)					
9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328-3	전	370	150	국(문경시)					
10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492	구	1,488	171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476	천	35,098	1,949	국(국토 교통부)					
12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329-1	천	532	360	국(문경시)					
13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329-3	답	339	236	국(문경시)					
14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506	도	50	16	국(국토 교통부)					
15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330	천	69	69	최*죽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수평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319-3	답	282	156	국(문경시)					
17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319-1	천	152	152	이*재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	이*재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	대장상 소유자	
18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318-3	답	330	177	국(문경시)					
19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318-1	천	254	254	이*연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				
20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485	도	149	50	국(국토 교통부)					
21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482	구	2,559	10	국(농림축 산식품부)					
22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486	도	625	56	국(국토 교통부)					
23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26-2	천	149	44	국(문경시)					
24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28-2	천	727	304	국(문경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5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28-3	답	357	163	국(문경시)					
26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30-1	답	129	54	국(문경시)					
27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32-2	천	281	73	국(문경시)					
28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32-3	답	247	79	국(문경시)					
29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33-1	천	982	458	국(문경시)					
30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488	구	3,243	21	국(농림축 산식품부)					
31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44-2	도	168	13	국(문경시)					
32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45-8 (245-1)	천	621	380	김*남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길 **				
33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45-9 (245-5)	답	367	151	김*남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4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45-6 (245-2)	답	1,421	34	박*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아랫호암길 ***				
35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45-4 (245-2)	답	1,421	338	박*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아랫호암길***				
36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47-1 (247)	답	1,385	622	박*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아랫호암길***				
37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48	천	172	172	임*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	임*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	대장상 소유자	
38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46-1 (246)	답	1,957	271	윤*섭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번가길 **- 서진벨리지 ****동 ***호				
39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49	천	1,334	1,334	임*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	임*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	대장상 소유자	
40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산111-3 (산111-1)	임	9,719	90	윤*울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1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64-2 (264-1)	전	156	56	윤*근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 유원아파트 ****동 ***호				
42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493	구	6,456	380	국(농림축 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43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65-1	천	807	807	국(문경시)					
44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490	구	2,410	7	국(농림축 산식품부)					
45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65-3	답	309	124	임*삼	대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 ***, ****동 *****호				
46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63-5 (263-1)	답	1,026	25	김*성 외3	대구 중구 인교동 *****				
47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63-6 (263-1)	답	1,026	58	김*성 외3	대구 중구 인교동 *****				
48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63-3	천	552	552	서*석	창구리 216				
49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65-2	답	835	835	임*삼	대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 ***, ****동 *****호				
50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66-2	답	568	568	임*삼	대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 ***, ****동 *****호				
51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66-3	천	869	869	김*길	창구리	김*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	대장상 소유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52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491	도	2,727	26	국(국토교 통부)					
53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68-4 (268-2)	답	1,012	19	임*규	경상북도 울산시 당산*길 **, 태화강 유보라 펠라티움 ****동 ****호				
54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68-5 (268-3)	답	72	64	임*규	경상북도 울산시 당산*길 **, 태화강 유보라 펠라티움 ****동 ****호				
55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69-6 (269-3)	답	570	1	임*규	경상북도 울산시 당산*길 **, 태화강 유보라 펠라티움 ****동 ****호				
56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69-5 (269-3)	답	570	551	임*규	경상북도 울산시 당산*길 **, 태화강 유보라 펠라티움 ****동 ****호				
57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69-4 (269-1)	답	445	35	임*규	경상북도 울산시 당산*길 **, 태화강 유보라 펠라티움 ****동 ****호				
58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69-2	천	225	225	임*규	경상북도 울산시 당산*길 **, 태화강 유보라 펠라티움 ****동 ****호				
59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73-4 (273-3)	답	435	338	임*규	경상북도 울산시 당산*길 **, 태화강 유보라 펠라티움 ****동 ****호				
60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73-2	천	225	225	신*희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	신*희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	대장상 소유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61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272-1 (272)	답	737	14	김*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				
62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528-1	천	3,942	42	국(국토교 통부)					
63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353-2 (353)	답	1,387	8	정*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 포항창포아이파크*차 *****-****				
64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353-1	답	8	6	국(문경시)					
65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325-1	전	42	34	국(문경시)					
66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325-2 (325)	전	1,108	100	고*모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	고*모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	대장상 소유자	
67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528	천	33,142	8,052	국(국토 교통부)					
68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산12-3 (산12-1)	임	11,107	225	채*식 외1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국골길 ***				
69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산12-4 (산12-1)	임	11,107	54	채*식 외1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국골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70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356	답	2,251	2,251	정*모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 ****동 ****호 (철산동, 철산한신아파트)				
71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산11-1 (산11)	임	12,694	127	김*기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창전길***- *				
72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323-5 (323-3)	천	274	131.3	김*식	문경군 산북면 전두리 368				
73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357-6 (357-3)	임	621	416.3	신*근 외1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길 **				
74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357-5 (357-1)	답	2,153	83.6	신*근 외1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길 **	신*엽	서울특별시 용산구 화나무로***나길 ***,***호 (이태원동)	대표자	
75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529	도	1,687	239	국(국토 교통부)					
76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320-1	도	2,109	20	국(문경시)					
77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514	구	7,737	18	국(농림축 산식품부)					
78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363-2	도	51	2	국(문경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79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361	천	456	456	청*주*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	청*주*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		
80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530	도	1,583	451	국(국토 교통부)					
81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515	구	6,675	20	국(농림축 산식품부)					
82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531	도	205	318	국(국토 교통부)					
83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423-2	도	1,191	110	국(문경시)					
84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401-2	답	2,974	1,108	국(문경시)					
85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424-1	답	355	18	국(문경시)					
86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427-1	답	154	57	국(문경시)					
87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428-2	답	428	198	국(문경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88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428-1	답	125	79	국(문경시)					
89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429-3	답	194	86	국(문경시)					
90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430-1	답	130	86	국(문경시)					
91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432-2	답	516	396	국(문경시)					
92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435-1 (435)	답	168	43.7	정*우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368				
93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506	구	25,339	29	국(농림축 산식품부)					
94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433-1	답	17	17	국(문경시)					
95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433-2	답	752	588	국(문경시)					
96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472-6 (472)	답	838	88	황*연	문경시 모전동 *** 영풍마드레빌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97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472-7 (472)	답	838	8	황*연	문경시 모전동 *** 영풍마드레빌 *****				
98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472-8 (472)	답	838	9	황*연	문경시 모전동 *** 영풍마드레빌 *****				
99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472-9 (472-1)	대	354	35	황*연	문경시 모전동 *** 영풍마드레빌 *****				
100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514	천	78,952	6,163	국(국토 교통부)					
101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533	도	613	104	국(국토 교통부)					
102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산108-1	도	851	48	국(문경시)					
103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396-2	도	3,162	520	국(문경시)					
104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417-2 (417)	답	342	81	박*준	경상북도 문경시 임촌길 ***-(공평동)				
105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353-4 (353)	답	5,300	717	전*식 외1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중앙로 ***- ** (관음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06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353-3 (353)	답	5,300	40	전*식 외1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중앙로 ***- ** (관음동)				
107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351-5 (351-3)	답	1,830	214	전*열 외2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번길 **, ****동 ****호 (금곡동, 신성푸른솔아파트)				
108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350-7 (350-1)	답	407	162	전*락 외2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모래바리길 **				
109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353-5 (353-2)	답	1,931	349	조*희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 *				
110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353-6 (353-2)	답	1,931	20	조*희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 *				
111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353-1	답	1,090	1,090	국(문경시)					
112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346	천	225	225	국(문경시)					
113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345-1	답	237	205	국(문경시)					
114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345-2	답	93	73	국(문경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15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341-1	답	1,444	20	국(문경시)					
116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333-2 (333)	답	2,889	417	조*희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 *				
117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324-1	답	705	705	채*식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거무길 **				
118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538	구	50	13	국(농림축 산식품부)					
119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533	도	2,501	41	국(농림축 산식품부)					
120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153-2 (153)	답	2,228	892	채*식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거산소야길 **				
121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154-2 (154)	답	2,438	480	채*식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거무길 **				
122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155-2 (155)	답	1,717	285	전*주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운달로 ***-*				
123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156-3 (156-1)	답	1,600	177	전*종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 ***동 ****호 (다정동, 가온마을4단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24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155-2 (155-1)	답	1,454	186	정*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운달로 ***				
125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156-2 (156)	답	1,439	250	채*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 ***동 ***호(평촌동, 향촌아파트)				
126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323-3	답	205	205	신*철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자조*길 **, *차동 ***호(건우아파트)				
127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529-2	구	44	22	국(농림축 산식품부)					
128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288-1 (288)	천	2,241	686	대*불*조 *중*룡*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	고*목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길 *(이천동)	대표자	용도 제방
129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288-1 (288)	천	2,241	310	대*불*조 *중*룡*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	고*목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길 *(이천동)	대표자	용도 담
130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288-1 (288)	천	2,241	411	대*불*조 *중*룡*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	고*목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길 *(이천동)	대표자	용도 하천
131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524-2	도	591	33	국(국토 교통부)					
132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321-1 (321)	전	783	131	채*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	(망)채* 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	대장상 소유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33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321-2 (321)	전	783	116	채*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	(망)채* 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	대장상 소유자	
134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320-1	답	664	86	국 (문경시)					
135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320-2 (320)	답	2,292	57	엄*흠	경상북도 문경시 남부*길 **, *층(모전동)				
136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486-5 (486-1)	전	1,425	472	채*식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거무길 *** *				
137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161-3	답	329	211	국 (문경시)					
138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161-4 (161-2)	답	848	171	황*익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길 *- **,*층 ***호 (장위동, 우진빌라)				
139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160-1	천	440	318	국 (문경시)					
140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803	천	73,606	5,759	국(국토 교통부)					
141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30-1 (330)	답	1,285	18	임*화 외2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42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31-4 (331)	답	3,360	31	진*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거무길 **				
143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94	구	400	140	국(농림축 산식품부)					
144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47-2 (347-1)	답	1,333	10	황*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 ****동 ****호 (매교동, 매교역푸르지오skview)				
145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48-3 (348)	답	705	17	황*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 ****동 ****호 (매교동, 매교역 푸르지오skview)				
146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94-2	구	376	335	국(농림축 산식품부)					
147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48-4 (348-1)	답	2,026	74	김*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 ****동 ****호(방학동, 방학동삼성래미안아파트)				
148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48-5 (348-2)	답	369	16	김*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 ****동 ****호(방학동, 방학동삼성래미안아파트)				
149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49-2 (349)	답	1,414	63	전*이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항세골길 **				
150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49-3 (349-1)	답	1,374	12	임*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 B동 ****호 (좌동, 베르나움오피스텔)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51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49-4 (349-1)	답	1,374	163	임*태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				
152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57-1	도	1,399	121	국(농림축 산식품부)					
153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51-3	도	46	54	국 (문경시)					
154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51-6 (51)	답	1,642	46	노*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도치동2길 **				
155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51-4	도	132	142	국 (문경시)					
156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51-5	도	344	348	국 (문경시)					
157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51-7 (51-1)	답	1,737	128	노*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도치동*길 **	농**기*공 *	경북 문경시 산양면 금천로 ***-	근저당권	
158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51-8 (51-2)	답	886	136	임*태 외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 B동 ****호 (좌동,베르나움오피스텔)				
159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51-9 (51-2)	답	886	10	임*태 외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 B동 ****호 (좌동,베르나움오피스텔)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0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51-10 (51-2)	답	886	77	임*태 외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 B동 ****호 (좌동,베르나움오피스텔)				
161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56-4 (56)	답	1,592	91	황*복	흥덕동 ***				
162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56-3 (56)	답	1,592	85	황*복	흥덕동 ***				
163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56-2 (56)	답	1,592	76	황*복	흥덕동 ***				
164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58-4	구	1,069	94	국(농림축 산식품부)					
165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57-3	도	2,285	440	국(농림축 산식품부)					
166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58-3	구	1,362	111	국(농림축 산식품부)					
167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400-2	도	83	73	국(국토 교통부)					
168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400-3	도	20	26	국(국토 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9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98-1	도	2,108	832	국 (문경시)					
170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99-2	도	238	169	국(국토 교통부)					
171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99-3	도	208	225	국(국토 교통부)					
172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802	구	972	68	국(농림축 산식품부)					
173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64-2	도	126	134	국(국토 교통부)					
174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64-4	도	73	47	국(국토 교통부)					
175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812	도	902	212	국(국토 교통부)					
176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65-2	도	320	47	국(국토 교통부)					
177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811	도	89	4	국(국토 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8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98-7 (398)	답	1,438	3	노*호	우곡리 ***				
179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98-8 (398)	답	1,438	14	노*호	우곡리 ***				
180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98-9 (398-6)	답	813	344	노*호	우곡리 ***				
181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20-1	답	1,509	447	국 (문경시)					
182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20-2 (20)	답	2,451	179	노*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도치동**길 **				
183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432-4	천	5,803	3,574	국(농림축 산식품부)					
184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64-1	천	36	36	노*협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	노*협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	대장상 소유자	
185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64-3	도	60	60	노*협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	노*협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	대장상 소유자	
186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60	임	757	335	국 (문경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87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59-1	천	659	521	국 (문경시)					
188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58	답	1,689	1,689	황*성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				
189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59	천	607	607	황*주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	황*주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	대장상 소유자	
190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838	구	198	301	국(국토 교통부)					
191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54	답	1,441	1,441	황*성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				
192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55	답	843	843	황*성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				
193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309	답	2,007	2,007	황*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 ***동 ****호 (매교동, 매교역푸르지오)				
194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110-4 (산110)	임	66,739	125	인*감*부*당 *자*파*중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서중안길 *				
195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112-1 (산112)	임	55,934	121	김*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 ***동 ****호 (영통동, 청명마을 건영아파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6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182	천	212	24	국 (문경시)					
197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804	구	65	6	국(농림축 산식품부)					
198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185	답	101	2	국 (문경시)					
199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910	도	3,665	141	국(농림축 산식품부)					
200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841-1	도	121	64	국 (문경시)					
201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841-2	답	426	21	국(경상 북도)					
202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572	천	20,301	86	국(국토 교통부)					
203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618	도	1,769	245	국(농림축 산식품부)					
204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619	구	1,541	494	국(농림축 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5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607-15	답	583	49	국(경상 북도)					
206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607-16	답	330	107	국(경상 북도)					
207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607-17	답	219	64	국(경상 북도)					
208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607-18	답	249	49	국(경상 북도)					
209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607-19	답	177	22	국(경상 북도)					
210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607-20	답	187	28	국(경상 북도)					
211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607-21	답	281	6	국 (경상북도)					
212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562-1	천	50,139	1,082	국(국토 교통부)					
213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42	천	727	727	안*흙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상리 **	(망) 안*흙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상리 **	대상상 소유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214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555	도	1,062	86	국(국토 교통부)					
215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43-12 (43-2)	대	232	55	이*리*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	임*흠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상리 **	대표자	
216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43-13 (43-2)	대	232	67	이*리*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	임*흠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상리 **	대표자	
217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43-11 (43-5)	대	521	12	고*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갯마도장골길 ***				
218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43-14 (43-5)	대	521	11	고*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갯마도장골길 ***				
219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43-15 (43-9)	대	452	238	황*영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범동 ****- 괘범2차한신아파트*****				
220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246-27 (246-24)	대	70	27	신*식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갯마도장골길 *	동*경*영 *동*합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	근저당권	
221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246-28 (246-6)	대	419	12	황*춘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가도길 *				
222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246-26 (246-6)	대	419	10	황*분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가도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3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26-2	도	1,481	7	국(국토 교통부)					
224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109-5 (109-4)	답	137	63	채*락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달곡로**				
225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산79-8 (산79-7)	임	612	318	채*락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달곡로**				
226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111-1	도	8,799	61	국 (문경시)					
227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110-2	답	330	97	국 (문경시)					
228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264-3 (264-2)	답	1,892	319	정*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동**다길 * (하 왕십리동)				
229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264-1	도	862	6	문경시					
230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269	천	162	162	김*로	약석리	김*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	대장상 소유자	
231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272-3 (272-1)	답	921	1,204	김*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윗한두리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32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278-1	도	42	42	변*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운달로 ***- *				
233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510	구	5,355	109	국(농림축 산식품부)					
234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277-1	천	304	304	임*성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상리 ***	임*성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상리 ***	대장상 소유자	
235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277-3 (277-2)	답	2,566	1,112	변*인 외1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운달로 ***- *				
236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282-1 (282)	답	1,904	774	신*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마골길 *				
237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283-1 (283)	답	1,309	17	황*	경상북도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				
238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191-1 (191)	답	2,307	209	우*성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신평길 ***- *				
239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192-1	천	740	740	대*불*조 *중*승*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				
240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192-3 (192-2)	답	1,205	759	대*불*조 *중*승*	경상북도 문경 산북면 전두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241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187-1	천	502	502	곽*중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	곽*중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	대장상 소유자	
242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187-3 (187-2)	답	1,481	659	곽*중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				
243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276-5 (276-3)	답	1,348	290	이*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운달로 ****-				
244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276-3	답	1,058	1,058	이*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운달로 ****-				
245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506	구	942	24	국(농림축 산식품부)					
246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193	답	274	274	이*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운달로 ****-				
247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185-2	천	251	251	강*학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				
248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185-4 (185-1)	답	1,537	307	강*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 ****동 ****호 (신현동,루원시티루에블리)				
249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186-2	천	393	393	채*석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250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186-1	답	643	161	박*서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토일*길 ***, ***동 ***호 (울진역센트럴두산위브아파트)				
251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186-5 (186-1)	답	643	482	박*서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토일*길 ***, ***동 ***호 (울진역센트럴두산위브아파트)				
252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98-1	천	108,552	7,047.00	국(국토 교통부)					

경상북도 공고 제2026-1385호

금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집중호우 재해 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금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 및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해복구사업

나. 명 칭 : 금천 재해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상북도지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사 업 명	위 치			사 업 기간		사 업 량	비고
	시 군	읍면동	리	착공일 (예정일)	준공일 (예정일)		
금천 재해복구사업	문경	동로 ~ 산양	노은 ~ 녹문	2024. 1. 31.	2026. 12. 31.	· 축제및호안 L=5.88km· 교량공 3개소 · 배수공 14개소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 착수예정일 : 2024. 1. 31.

나. 사업 준공(변경)예정일 : 2026. 12. 31.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참조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청 수자원관리과(054-880-40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금천 재해복구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총 204 필지			1,299,082	95,503						
1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98-1	도	3,016	85	국(문경시)					
2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555-1 (555)	천	698	208	한*준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	한*준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적성큰마길 ***-***	대장상 소유자	
3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666	천	53,090	335	국(국토 교통부)					
4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412-10 (412-3)	답	2,415	6	김*용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 주공아파트 *-****				
5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412-9 (412-2)	천	258	40	김*동	동로면 적성리 ***				
6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395	도	7,726	183	국 (경상북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7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412-7	천	387	54	(경상북도)					
8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415-2 (415)	답	2,305	111	박*수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여우목로 ****				
9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415-3 (415)	답	2,305	518	박*수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여우목로 ****				
10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415-4 (415-1)	답	743	175	임*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생파길 ***, ***동 ***호 (화성봉담* LH*단지)				
11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460-1	도	3,168	387	국(문경시)					
12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209	천	71,316	1,870	국(국토 교통부)					
13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13	도	1,468	328	국(국토교 통부)					
14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68-3 (168-1)	답	4,694	32	진*병 외2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				
15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3-1 (산3)	임	83,306	33	박*호 외2	경상북도 문경시 한절골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6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81-4	도	83	69	국 (경상북도)					
17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78-1	도	1,328	603	국(국토 교통부)					
18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81-9 (181-1)	전	612	119	장*주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호 (모 전동뉴글로벌시티)				
19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79-10 (179-5)	답	2,727	8	권*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 전농sk아파트 *****호				
20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79-1	천	420	420	장*덕	경상북도 문경시 등로면 노은리 ***				
21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79-9	천	157	8	국(문경시)					
22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79-11 (179-5)	답	2,727	496	권*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 전농sk아파트 *****호				
23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69-1 (169-3)	답	2,364	1,464	남*인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24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79-7	도	95	95	국 (경상북도)					
25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12	도	188	164	국(국토 교통부)					
26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79-3	도	76	76	국(국토 교통부)					
27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79-2	도	63	49	국 (경상북도)					
28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70-1 (170)	전	701	76	우*열 외1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국원*길 *-*				
29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16-1	구	8,906	218	국(농림축 산식품 부)					
30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72-8	도	60	39	국(문경시)					
31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4-8 (산4-4)	임	36,792	271	박*호 외1	경기도 의왕시 갈미로 *, ***동 ***호 (내손동,대원컨터빌*단지)				
32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69-2	도	63	63	국(동로면)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33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72-2	도	1,045	391	국(국토 교통부)					
34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14	도	1,130	258	국(국토 교통부)					
35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72-11	도	73	38	국 (경상북도)					
36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72-4	도	40	40	국(국토 교통부)					
37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72-1	답	856	224	국(문경시)					
38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05	도	3,868	48	국(국토 교통부)					
39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94-1 (194)	답	1,980	149	임*옥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함미성길 **				
40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93-3 (193-1)	답	3,395	1,905	임*옥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함미성길 **				
41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93-2	천	410	410	백*석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	백*석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	대장상 소유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42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213-9 (213-1)	답	2,025	55	임*옥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할미성길 **				
43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214-5 (214-1)	답	1,315	363	천*득 외1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할미성길 **				
44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214-2 (214-2)	천	658	505	이*인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				
45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214-4 (214-2)	천	658	153	이*인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				
46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214-3	답	47	47	천*득 외1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할미성길 **				
47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215	천	2,241	21	국(문경시)					
48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308-2 (308)	답	968	11	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길 **(대림동)				
49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308-1 (308)	답	968	73	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길 **(대림동)				
50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22-5	도	575	373	국(국토교통 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51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57-1	임	34	34	국(문경시)					
52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57	임	24,164	504	국(문경시)					
53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62-1 (산62)	임	75,372	46	양*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 한아름아파트 *****				
54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309	전	195	195	주*연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시장길 ***-*** (서동)				
55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339	천	357	357	엄*용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 *				
56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58-1 (산58)	임	18,248	185	이*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길 *** (망우동)	이*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길 **, ***호 (이문동, 리첸트빌*차)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조*규	경상북도 문경시 호서로 **	지상권	
57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338	임	50	50	신*우 외2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				
58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31	도	1,455	15	국(국토 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59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30	도	10	10	국(국토 교통부)					
60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337	전	92	92	황*송		황*송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	대장상 소유자	
61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336	천	1,074	1,074	엄*용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 *				
62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08-3	구	313	313	국(농림축 산식품부)					
63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788-2 (788)	전	3,656	93	권*숙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동 ***호 (비산동 강변보성타운)				
64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55	답	836.7	836.7	신*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길 **, ***동 ***호 (수서동, 신동아 아파트)				
65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56-1 (1156)	답	1,035.4	189.6	정*문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치선오상길 **, 경신아파트 ***호				
66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790	천	842	842	국(문경시)					
67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218	구	958	56	국(농림축 산식품 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68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795	답	152	152	황*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 (동로면 간송*리 ***)				
69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58-2 (1158)	답	1,057.5	70	황*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 (동로면 간송*리 ***)				
70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57-1 (1157)	답	1,144.2	534	황*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 (동로면 간송*리 ***)				
71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795-1 (795)	답	220	220	황*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 (동로면 간송*리 ***)				
72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220	구	736	23	국(농림축 산식품 부)					
73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61-1 (1161)	답	2,023.9	7.8	황*현	경상북도 문경시 여중1길 30, ****동 ****호 (모전동,신원아침도시 아파트)				
74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60	답	799.1	799.1	오*성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사부동길 **				
75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60-1 (1160)	답	1,552.0	752.9	오*성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사부동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76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219	도	1,221	1,172	국(농림축 산식품 부)					
77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794	천	308	308	국(문경시)					
78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794-1	도	121	93	국(문경시)					
79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760-3	도	285	25	국(문경시)					
80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32	도	76	42	국(국토교 통부)					
81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760-4	도	8	8	국(문경시)					
82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64-1 (1164)	답	1,632	557.1	신*현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안궁리 ***-*				
83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760-2	천	481	481	국(문경시)					
84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66-1 (1166)	답	1,741.6	188.9	신*현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사부동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85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08-2	구	27	27	국(농림축 산식품부)					
86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27-2	도	27	27	국(국토 교통부)					
87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222	도	809	778	국(농림축 산식품부)					
88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223	구	1,193	60	국(농림축 산식품부)					
89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746-2	천	96	96	국(문경시)					
90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745-1	천	707	283	국(국토 교통부)					
91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745-2	답	807	807	정*문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여우목로 *****				
92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746-5 (746-1)	답	814	72	최*묵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사부동길 *-*				
93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709-10 (709-3)	답	606	60	이*숙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동 ****호 (원종동, 더원루미에르)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94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704-9 (704-4)	답	375	16	이*숙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길 ***- (모전동)				
95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18-1 (918)	대	288	140	황*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 **번길 ***-**, *동 ***호				
96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225	구	110	57	국(농림축 산식품부)					
97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20-1 (920)	답	397	185	함양박씨주 수종중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				
98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692-1 (692)	전	3,031	17	함양박씨주 수종중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				
99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21-2 (921)	전	1,137	155	권*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시읍 대실역북로*****동 ***호 (대실여청아람 *단지)				
100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21-3 (921-1)	임	656	220	김*국 외1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로 ***-*** ***호 (홍은한마을아파트)				
101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19	임	126	126	이*광		이*광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	대장상 소유자	
102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17	천	54	54	국(문경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03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69-2 (1169-1)	답	1,575.9	561.3	홍*신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				
104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51	구	1,188	982	국(농림축 산식품부)					
105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22	도	688	688	국(문경시)					
106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23-1 (923)	전	631	464	박*상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천주길 *				
107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23	전	167	167	박*상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천주길 *				
108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35	답	175	175	이*광		이*광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	대장상 소유자	
109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111-3 (산111-1)	임	7,702	72	김*국 외1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로 ***-*** 호 (홍은한마을아파트)				
110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25-1 (925)	전	281	45	이*교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천주길 **				
111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53	도	46	46	국(국토 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12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231	구	784	52	국(농림축 산식품 부)					
113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34	도	515	506	국(문경시)					
114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32	답	254	254	배*석 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길 **, ****동 ****호 (일원동,목련타운(아))				
115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33	도	392	281	국(문경시)					
116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52	답	625	625	배*석 외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길 **, ****동 ****호 (일원동,목련타운(아))				
117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53	천	1,817	556	국(문경시)					
118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43	구	6,922	23	국(농림축 산식품 부)					
119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50-1	답	210	210	김*수	경기 광주시 경춘대로 ****번길 **, 쌍령*차동성아파트 ****동 ****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20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54	천	282	282	국(문경시)					
121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56	천	212	154	국(문경시)					
122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57	천	358	210	국(문경시)					
123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87	천	309	32	국(문경시)					
124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151-3	구	13	4	국(농림축 산식품부)					
125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097	천	166,315	13,855	국(국토 교통부)					
126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983-4	천	128	4	국(문경시)					
127	문경시 동로면 마광리	845	도	307	217	국(국토 교통부)					
128	문경시 동로면 마광리	627-6 (627-3)	답	1,147	14	손*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동 ****호(창곡동, 아트리버 푸르지오)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29	문경시 동로면 마광리	605-1 (605)	천	291	173	손*수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마광리 ***	(망) 손*수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길 **-, ***호 (에이스빌*자)	대장상 소유자	
130	문경시 동로면 마광리	841	도	684	46	국(국토 교통부)					
131	문경시 동로면 마광리	604-1 (604)	답	588	37	손*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길 **, ***동 *****호 (신정동, 목동파크자이)				
132	문경시 동로면 마광리	846	도	1,250	372	국(국토 교통부)					
133	문경시 동로면 마광리	812	천	56,560	2,729	국(국토 교통부)					
134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406	답	1,312	1,312	김*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	김*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	대장상 소유자	
135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332	도	258	188	국(국토 교통부)					
136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333	구	1,632	229	국(농림축 산식품부)					
137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548	답	892	892	장*남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1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38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548-1 (548)	답	1,326	434	장*남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1길 ***-				
139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547	답	2,615	2,615	장*남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1길 ***-				
140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551-2 (551)	답	1,238	452	박*우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길**, ***동***호(모전동, 매봉마을)				
141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551-1	답	61	41	국(문경시)					
142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552-1	답	479	78	국(문경시)					
143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559	구	2,036	58	국(농림축 산식품부)					
144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856-1 (856)	답	1,451	639	김*협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				
145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841	천	1,223	1,223	김*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	김*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길 ***	대장상 소유자	
146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357-3	구	1,821	8	국(농림축 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47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358-3	도	672	232	국(국토 교통부)					
148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852	도	2,550	1,464	국(농림축 산식품부)					
149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879-1 (879)	답	572	100	김*협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				
150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843-1 (843)	답	2,456	51	홍*철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동 *****호 (철산동철산한신아파트)				
151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844-1 (844)	답	635	359	장*욱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동 *****호 (삼산동 삼산타운*단지아파트)				
152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844	답	276	276	장*욱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동 *****호 (삼산동 삼산타운*단지아파트)				
153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852-1	구	389	24	국(농림축 산식품부)					
154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880-3 (880-2)	답	3,018	458	박*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1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55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327	구	17,990	105	국(농림축 산식품 부)					
156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902	답	955	955	김*영 외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동 ****호 (화명동,대우푸르지오)				
157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845-1 (845)	답	3,549	700	반*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정금길 **				
158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905	구	363	57	국(농림축 산식품 부)					
159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903-1 (903)	답	1,632	8	반*삼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층				
160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905-2	도	3,994	1,429	국(농림축 산식품 부)					
161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905-1	구	498	41	국(농림축 산식품 부)					
162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913-1 (913)	답	1,964	730	안*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정금길 ***				
163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904-1 (904)	답	1,680	806	임*식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64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900-1 (900)	답	1,720	268	엄*운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				
165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978-1 (978)	답	2,134	919	지*근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				
166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911-1 (911)	답	3,066	8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167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363	구	3,582	174	국(농림축 산식품 부)					
168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002-1 (1002)	답	3,018	13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169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000-2 (1000)	답	2,846	260	엄*원 외2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길 **				
170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917	천	800	800	박*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 *****동 *****호 (동백동호수미음휴먼시아)				
171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915-1 (915)	전	3,021	1,425	이*숙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				
172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363-1	도	1,413	766	국(농림축 산식품 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73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367	구	2,112	86	국(농림축 산식품부)					
174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000-1	답	684	432	국(국토 교통부)					
175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977-2	천	707	707	박*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로 ** * ** * ** 동 * ** * ** 호 (동백동호수마을휴먼시아)				
176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977-1	답	830	830	박*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로 ** * ** * ** 동 * ** * ** 호 (동백동호수마을휴먼시아)				
177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363-2	구	1,103	45	국(농림축 산식품부)					
178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054-1 (1054)	답	1,764	391	김*길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 *길 ** 대영*차 A동 * ** * ** 호				
179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055-1 (1055)	답	1,389	763	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길 * ** * ** 호 (서초동현대이에스에 이아파트)				
180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976-1 (976)	답	1,438	376	박*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 * ** 동 * ** * ** 호 (간석동 어울림마을아파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81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363-3	도	2,093	1,903	국(농림축 산식품부)					
182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363-4	구	363	35	국(농림축 산식품부)					
183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059-1 (1059)	답	603	403	박*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양대학교 ***, 양지마을아파트 ****동 ***호				
184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059	답	200	200	박*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양대학교 ***, 양지마을아파트 ****동 ***호				
185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058-1 (1058)	답	1,262	258	박*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마을**단지 경남아너스빌 *****				
186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057-1 (1057)	답	876	190	홍*식 외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 동 ***호 (좌동 두산*차아파트)				
187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985-4	도	25	2	국 (경상북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88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980-4	도	47	47	국 (경상북도)					
189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980-2	도	231	231	박*교 외6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		박*교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	대장상 소유자	
								황*용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상리 **	대장상 소유자	
								황*주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고래무덤길 **	대장상 소유자	
								황*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	대장상 소유자	
190	문경시 산북면 약석리	산77	구	3,250	59	국(농림축 산식품부)		황*명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	대장상 소유자	
191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309	천	226,178	11,001	국(국토 교통부)		황*량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	대장상 소유자	
192	문경시 산양면 녹문리	400-1	천	90,314	198	국(국토 교통부)		황*봉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	대장상 소유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93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362-4	천	27,174	290	국(국토교 통부)					
194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370	도	554	77	국(국토교 통부)					
195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61-1 (61)	전	714	81	채*호 외1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현리*길 **				
196	문경시 산북면 존도리	62	천	1,409	1,409	채*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현리*길 **				
197	문경시 산북면 존도리	62-1 (62)	천	2,149	872	채*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현리*길 **				
198	문경시 산북면 존도리	761	구	357	37	국(국토 교통부)					
199	문경시 산북면 존도리	5	천	96	25	국(국토 교통부)					
200	문경시 산북면 존도리	4	천	1,332	398	국(국토 교통부)					
201	문경시 산북면 존도리	726	천	56,506	1,906	국(국토 교통부)					

입원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202	문경시 산북면 존도리	726-1	구	223	74	국(국토 교통부)					
203	문경시 산북면 연소리	515	천	68,202	566	국(국토 교통부)					
204	문경시 산북면 연소리	515-1	제	1,102	5	국(국토 교통부)					

경상북도 공고 제2026-1390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 7. 13.

경 상 북 도 지 사

1.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체명 (대표자)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예정된 처분내용	처분근거
윌트건설 주식회사 (송재득)	건축공사업 (1601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운하로 160, 118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 위반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
(주)천호토건 (강병진)	토목공사업 (10-010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회망대로 659번길 65-1			
주식회사 화랑종합건설 (최진혁)	건축공사업 (16-0774)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남2길 5, 2층			
주식회사 태수건설 (남상목)	건축공사업 (01-3959)	경상북도 문경시 돈달로 10, 201호			
(주)해성토건 (박동호)	건축공사업 (16-0455)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51길 10, 2층			
경서종합 건설주식회사 (최재관)	건축공사업 (16-0744)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금송로 325, 부속 7동 106호			
비케이기술 산업주식회사 (김민석)	건축공사업 (16-1024)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1길 48-1, 2층			
주식회사 비엔엘 종합건설 (배민철, 이기홍)	건축공사업 (16-0743)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리 399-7, 2층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미달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주식회사 태수건설 (남상목)	건축공사업 (01-3959)	경상북도 문경시 돈달로 10, 201호			

가.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8. 12.(수) 14:00 / 경북도청 도시계획과

(부속 회의실)

나. 청문주재자 : 경상북도청 지역개발과 김형준

다. 청문참석자 :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라. 구비서류

- 1) 참석자 도장, 신분증
 - 2)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통지서 및 자격입증 서류
 -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 4) 청문 통지내용에 대한 반증 혹은 소명자료
2.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도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 귀하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도청 도시계획과(☎054-880-3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군

고 시

구미시 고시 제2026-165호

구미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529-1번지 일원 구미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구 미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나.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 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연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4	연구시설	선산읍 이문리 529-1번지 일원	-	증)3,289	3,289	-	

2) 연구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연구시설	- 신설 A = 3,289㎡	-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제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결정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계획과(054-480-5405), 선산출장소 농식품 산업과(054-480-59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끝.

경산시 고시 제2026-129호

경산 도시관리계획(꿈누리어린이공원) 결정(변경) 고시

경산시 압량읍 부적리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3항에 의거 부적5 어린이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명칭 변경 결정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13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26	부적5공원	꿈누리공원	어린이 공원	압량읍 부적리 413-2일원	2,033	경상북도고시제제289호 (1985.12.19.)	

- 2) 변경 사유 : 중립적이고 주민친화적인 명칭으로 변경하여 인근 주민들이
모두 함께 이용하는 생활권 공원으로 조성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 별 첨(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eu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함.

3.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053-810-5513) 및 공원녹지과(☎053-810-6151)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시 군

공 고

구미시 공고 제2026-2048호

구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안) 공람공고

구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3일

구 미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491-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사업 ◦ 명 칭 :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확장조성공사						
3. 사업의 규모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40	노외주차장	송정동 491-1번지	999.4	구미시 제2004-90호 (’05.1.13.)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246, 301호 ◦ 성 명 :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8. 2. 23.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 후, 준공 전 양도하여야 함						
7. 사용·수용할 토지조서	◦ 불임과 같음						
8. 공람기간	◦ 2026. 7. 13. ~ 2026. 8. 3. (15일간)						
9. 공람장소	◦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구미시 구미대로 246, 301호) ◦ 구미시청 도시계획과(구미시 송정대로 55, 별관2 2층)						

※ 관계도서는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054-605-5204), 구미시청 도시계획과(054-480-5405)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계				999.4	999.4				
1	송정동	491-1	대	999.4	999.4	구미시	-	-	

상주시 공고 제2026-108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 3-126 외 2개소) 실시계획 열람공고

1. 상주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 3-126 외 2개소)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 등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상주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26. 7. 13.

상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동 183-2번지 지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 3-126 외 2개소)]

나. 사업의 명칭 : 국민연금공단-일미식당 소로(3-126)외 2개소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B=6~6.5m, L=100.0m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9. 12. 31.

5. 사업시행자

가.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나. 성명 : 상주시(상주시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계	도시계획 시설	성 명	주소	
합계		10필지		3,723	888	888			
1	신봉동	183-2	도	1,143	46	46	상주시	공	소1-5호
2	신봉동	710-6	도	5	5	5	건설부	국	"
3	신봉동	244-2	전	1	1	1	상주시	공	"
4	신봉동	709-12	구	96	96	96	건설부	국	"
5	신봉동	179-7	도	812	34	34	상주시	공	소2-26호
6	신봉동	709-16	구	3	3	3	건설부	국	"
7	신봉동	709-14	구	153	153	153	건설부	국	"
8	신봉동	244-5	전	91	91	91	상주시	공	소3-126호
9	신봉동	244-3	전	126	126	126	상주시	공	"
10	신봉동	242-9	대	90	90	90	상주시	공	"
	신봉동	242-11	전	85	85	85	상주시	공	"
	신봉동	248-2	대	67	67	67	상주시	공	"
	신봉동	248-1	대	120	52	52	상주시	공	"
	신봉동	248-2	대	689	30	30	상주시	공	"
	신봉동	710-3	도	244	11	11	건설부	국	"

※ 편입지번 및 면적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물건조서는 편입토지 상에 물건 및 권리관계 등 일체로 같음하며,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열람장소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도시과 도시개발팀(054-537-75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양군 공고 제2026-618호

영양 군계획시설(수변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재열람 공고

영양군 영양읍 삼지리, 동부리 일원의 영양 군계획시설(수변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 재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3일

영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영양군 영양읍 삼지리, 동부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종류 : 공간시설(수변공원)
- 명칭

- 당초 : 영양 삼지연꽃테마파크 조성사업
- 변경 : 영양 삼지연꽃테마파크(파크골프장)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사업면적 : 367,393㎡ → 374,113㎡(증 6,720㎡)
- 변경사유 :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따른 공원확장 및 공원조성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

4.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7. 6. 3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영양군수
- 주소 :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6. 열람 및 의견청취

- 기간 : 2026. 7. 13. ~ 2026. 7. 27.
- 장소 : 영양군청 지역개발과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 권리조서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합 계			374,113	374,113						
1	영양읍 동부리	8-1	전	3,350	3,350	영양군					
2	영양읍 동부리	8-3	전	13	13	영양군					
3	영양읍 동부리	8-4	전	20	20	국(국토 교통부)					
4	영양읍 동부리	9-1	묘	724	724	영양군					
5	영양읍 동부리	9-2	도	619	619	영양군					
6	영양읍 삼지리	50-3	전	292	292	영양군					
7	영양읍 삼지리	50-10	전	381	381	영양군					50-3에서 분할
8	영양읍 삼지리	51-8	전	409	409	영양군					
9	영양읍 삼지리	57-1	구	583	583	국(농림축 산식품부)					
10	영양읍 삼지리	61-1	구	1,683	1,683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영양읍 삼지리	74	답	5,483	5,483	영양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조서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2	영양읍 삼지리	76	답	4,399	4,399	영양군					
13	영양읍 삼지리	81-2	도	3,746	3,746	국(농림축 산식품부)					
14	영양읍 삼지리	83-3	구	1,821	1,821	국(농림축 산식품부)					
15	영양읍 삼지리	84	구	3,978	3,978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국(농림축산식품부) 에서 소유자변경
16	영양읍 삼지리	85	도	304	304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국(농림축산식품부) 에서 소유자변경
17	영양읍 삼지리	86	구	359	359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국(농림축산식품부) 에서 소유자변경
18	영양읍 삼지리	87	답	3,197	3,197	영양군					
19	영양읍 삼지리	89	답	3,425	3,425	영양군					
20	영양읍 삼지리	90	답	1,495	1,495	영양군					
21	영양읍 삼지리	90-1	답	625	625	영양군					90에서 분할
22	영양읍 삼지리	91	답	4,265	4,265	영양군					
23	영양읍 삼지리	92	답	3,527	3,527	영양군					
24	영양읍 삼지리	96	답	3,932	3,932	영양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조서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5	영양읍 삼지리	100-5	전	476	476	영양군					
26	영양읍 삼지리	142-6	도	186	186	영양군					
27	영양읍 삼지리	157-1	도	136	136	국(국토 교통부)					
28	영양읍 삼지리	157-2	도	13	13	국(국토 교통부)					
29	영양읍 삼지리	158-2	전	416	416	영양군					
30	영양읍 삼지리	179-2	도	161	161	영양군					
31	영양읍 삼지리	181	답	1,139	1,139	영양군					
32	영양읍 삼지리	183	답	7,224	7,224	영양군					
33	영양읍 삼지리	186-9	답	51	51	영양군					
34	영양읍 삼지리	193-2	구	654	654	국(농림축 산식품부)					
35	영양읍 삼지리	194	도	530	530	국(농림 수산부)					
36	영양읍 삼지리	198-2	답	4,747	4,747	영양군					
37	영양읍 삼지리	200	유	58,659	58,659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조서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38	영양읍 삼지리	200-2	유	354	354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9	영양읍 삼지리	204-3	답	2,906	2,906	영양군					
40	영양읍 삼지리	205-3	전	2,307	2,307	영양군					
41	영양읍 삼지리	205-4	전	3,598	3,598	영양군					
42	영양읍 삼지리	205-6	전	233	233	국(국토 교통부)					
43	영양읍 삼지리	205-7	전	240	240	국(국토 교통부)					
44	영양읍 삼지리	205-12	전	184	184	국(국토 교통부)					
45	영양읍 삼지리	205-13	전	178	178	국(국토 교통부)					
46	영양읍 삼지리	214-1	유	9,511	9,511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47	영양읍 삼지리	214-2	구	16	16	국 (농수산부)					
48	영양읍 삼지리	238	답	474	474	영양군					
49	영양읍 삼지리	240	답	4,121	4,121	영양군					
50	영양읍 삼지리	250-1	도	400	400	국(농림축 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조서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51	영양읍 삼지리	251-1	구	253	253	국(농림축 산식품부)					
52	영양읍 삼지리	251-2	구	295	295	국(농림축 산식품부)					
53	영양읍 삼지리	251-3	구	187	187	국(농림축 산식품부)					
54	영양읍 삼지리	251-4	구	368	368	국(농림축 산식품부)					
55	영양읍 삼지리	262	답	2,090	2,090	곽상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06, 125동 1310호				신규편입
56	영양읍 삼지리	263	답	2,101	2,101	영양군					신규편입
57	영양읍 삼지리	264	답	4,059	4,059	영양군					
58	영양읍 삼지리	266-5	답	2,529	2,529	영양군					신규편입
59	영양읍 삼지리	266-6	답	1,891	1,891	영양군					
60	영양읍 삼지리	267	답	4,882	4,882	영양군					
61	영양읍 삼지리	283-10	답	2,212	2,212	영양군					
62	영양읍 삼지리	284	답	9,840	9,840	영양군					
63	영양읍 삼지리	290-4	답	2,090	2,090	영양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조서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64	영양읍 삼지리	291	답	9,711	9,711	영양군					
65	영양읍 삼지리	366-2	구	2,496	2,496	국(농림축 산식품부)					
66	영양읍 삼지리	367-7	도	1,887	1,887	국(농림축 산식품부)					
67	영양읍 삼지리	367-9	도	205	205	국(농림축 산식품부)					
68	영양읍 삼지리	367-10	도	84	84	국(농림축 산식품부)					
69	영양읍 삼지리	367-11	도	269	269	국(농림축 산식품부)					
70	영양읍 삼지리	367-13	도	128	128	국(농림축 산식품부)					
71	영양읍 삼지리	367-15	도	135	135	국(농림축 산식품부)					
72	영양읍 삼지리	367-16	도	630	630	국(농림축 산식품부)					
73	영양읍 삼지리	367-17	도	3,745	3,745	국(농림축 산식품부)					
74	영양읍 삼지리	368-1	구	141	141	국(농림축 산식품부)					
75	영양읍 삼지리	369-2	구	1,454	1,454	국(농림축 산식품부)					
76	영양읍 삼지리	370-6	답	1,803	1,803	영양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조서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77	영양읍 삼지리	370-7	답	792	792	영양군					
78	영양읍 삼지리	371	답	1,692	1,692	영양군					
79	영양읍 삼지리	372	답	2,704	2,704	영양군					
80	영양읍 삼지리	373-6	구	546	546	국(농림 수산부)					
81	영양읍 삼지리	373-10	구	2,065	2,065	국(농림축 산식품부)					
82	영양읍 삼지리	373-11	구	580	580	국(농림축 산식품부)					
83	영양읍 삼지리	377-7	답	3,064	3,064	영양군					
84	영양읍 삼지리	378	답	5,045	5,045	영양군					
85	영양읍 삼지리	379-3	답	2,102	2,102	영양군					
86	영양읍 삼지리	380-3	답	1,593	1,593	영양군					
87	영양읍 삼지리	381	답	1,790	1,790	영양군					
88	영양읍 삼지리	381-5	답	321	321	영양군					
89	영양읍 삼지리	383-1	구	630	630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국(농림축산식품부) 에서 소유자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조서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90	영양읍 삼지리	384-1	구	562	562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국(농림축산식품부) 에서 소유자변경
91	영양읍 삼지리	385-1	도	282	282	국(농림 수산부)						
92	영양읍 삼지리	386	답	4,321	4,321	영양군						
93	영양읍 삼지리	386-4	답	683	683	영양군						386에서 분할
94	영양읍 삼지리	387	답	5,803	5,803	영양군						
95	영양읍 삼지리	387-5	답	11	11	영양군						387에서 분할
96	영양읍 삼지리	390	답	5,745	5,745	영양군						
97	영양읍 삼지리	413-2	유	43,292	43,292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국(농림축산식품부) 에서 소유자변경
98	영양읍 삼지리	413-4	유	129	129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국(농림축산식품부) 에서 소유자변경 413-2에서 분할
99	영양읍 삼지리	460-3	도	173	173	국(국토 교통부)						
100	영양읍 삼지리	461-2	도	133	133	국(국토 교통부)						
101	영양읍 삼지리	463-1	도	245	245	국(국토 교통부)						
102	영양읍 삼지리	468	도	563	563	국(국토 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조서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03	영양읍 삼지리	203-1	임	3,479	3,479	국(국토 교통부)					
104	영양읍 하원리	130-1	도	2,299	2,299	국(농림축 산식품부)					
105	영양읍 하원리	131-1	구	724	724	국(농림축 산식품부)					
106	영양읍 하원리	145-1	구	764	764	국(농림축 산식품부)					
107	영양읍 하원리	145-2	구	134	134	국(농림축 산식품부)					
108	영양읍 하원리	146-1	도	149	149	국(농림축 산식품부)					
109	영양읍 하원리	147	답	7,164	7,164	영양군					
110	영양읍 하원리	156	전	5,396	5,396	영양군					
111	영양읍 하원리	156-3	전	171	171	영양군					156에서 분할
112	영양읍 하원리	156-4	전	208	208	영양군					156에서 분할
113	영양읍 하원리	160	답	5,184	5,184	영양군					
114	영양읍 하원리	163-4	답	912	912	영양군					
115	영양읍 하원리	163-2	답	499	499	영양군					
116	영양읍 하원리	170	유	23,772	23,772	원당지	17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조서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17	영양읍 하원리	172	답	6,913	6,913	영양군					
118	영양읍 하원리	175-2	구	414	414	영양군					
119	영양읍 하원리	175-3	답	844	844	영양군					
120	영양읍 하원리	180-1	구	2,907	2,907	국(농림축 산식품부)					
121	영양읍 하원리	181	답	12,846	12,846	영양군					
122	영양읍 하원리	184	답	2,889	2,889	영양군					
123	영양읍 하원리	187	답	7,434	7,434	영양군					
124	영양읍 하원리	194-3	전	27	27	영양군					
125	영양읍 하원리	347-2	도	119	119	국(국토 교통부)					
126	영양읍 하원리	351-5	도	970	970	국(국토 교통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관계서류 및 도면은 영양군청 지역개발과(054-680-634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기 타

고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6-41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상주시장(새마을체육과)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남성동)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968-1번지 면적 : 73,460㎡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낙동강변 축구장 및 부대시설 조성 ○ 변경사유 :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기간연장 ○ 시설개요 · 축구장 4개소, 인조잔디 37,490㎡, 골대 4조 · 비구방지 헨스(H=8.0m, 비개폐형) 2개소 · 개폐형 그물망 헨스(H=5.0m) 1,269m, 메쉬헨스 출입문(4.0×4.0) 8조 · 잔디블럭 31,591㎡, 진출입로(6.0m) 120m, 계단 6개소 · 유공관(150, 300mm) 3,798m, 파형강관(400mm) 410m · 조명타워(H=24m) 8기, 이동식 전광판 4개소 · 이동식 컨테이너 6개소, 이동식 화장실 4개소 · 관람석 6개소(504석), 이동식 관람석 1개소(22석) · 이동식 관람석 16개소(496석), 그늘막(5×20m) 8개소 · 파고라(4.4×3.2m) 1개소, 운동시설 15개소
점 용 기 간	당초 :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변경 : 2026년 07월 0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6-41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물관리총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객거리 612번지 외 2필지 일원 면적 : 3㎡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지하수위 변화 관측 계측기 설치 ○ 변경사유 :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기간연장 ○ 시설개요 : 지하수위 변화 관측 계측기 설치 3개소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객거리 612 중 1㎡ : 계측기 1개소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 515-1 중 1㎡ : 계측기 1개소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부리 753-17 중 1㎡ : 계측기 1개소
점 용 기 간	당초 : 2016년 08월 02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변경 : 2026년 07월 01일부터 2031년 06월 30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6-42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전력공사 경산지사장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8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172-2번지 일원(금호강) 면적 : 1,498㎡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 변경사유 :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기간연장 ○ 시설개요 : 한전주 설치 8본
점 용 기 간	당초 : 2021년 08월 18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변경 : 2026년 07월 01일부터 2031년 06월 30일까지



기 타

공 고

공고 제 2026-2호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경상북도 구미시 의회사무국			직위	(전)시의원		성명	이명희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배우자	답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170번지 749.00㎡	442,450	0	0	442,450		
배우자	도로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222-1번지 15.00㎡	133,921	0	0	133,921		
배우자	답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169번지 470.00㎡	886	0	0	886		
배우자	답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168-2번지 2.00㎡	85,681	0	0	85,681		
배우자	답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168-1번지 4.00㎡	357	0	0	357		
배우자	답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168-1번지 4.00㎡	715	0	0	715		
배우자	답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130-4번지 4.00㎡	890	0	0	890		
배우자	주차장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1,197.00㎡	220,000	0	0	220,000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액)	감소액 (실거래가액)		
▶ 건물(소계)							
			1,492,894	0	0	1,492,894	
본인	복합건물 (주택+상가)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대지 330.00㎡ 건물 781.36㎡	912,740	0	0	912,740	
본인	상가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구미원호푸르지오 대지 48.30㎡ 건물 36.25㎡	178,093	0	0	178,093	
본인	상가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구미원호푸르지오 대지 62.80㎡ 건물 47.13㎡	150,730	0	0	150,730	
배우자	동·식물 관련 시설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건물 18.00㎡	331	0	0	331	
배우자	아파트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구미원호푸르지오 건물 156.35㎡	251,000	0	0	251,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8,789	0	417	58,372	
배우자	자동차	2010년식 모닝 배기량(999cc)	1,657	0	417	1,240	
배우자	자동차	2020년식 한성2.1톤크레인집게차 배기량(6,299cc)	57,132	0	0	57,132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예금(소계)							
본인		국민은행 74, 농협생명보험 4,856(91 증가), 농협중앙회 10,322(10,322 증가), 미래에셋증권 2,078(221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41,332(553 증가), 세마을금고중앙회 17,506(759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2,951(416 증가), 한화손해보험 724(140 증가)	271,727	32,916	25,594	279,049	
			97,341	12,502	0	109,843	
배우자		(주)KB손해보험 2,800(100 증가), DB손해보험(주) 4,075(409 증가), 교보생명보험 102,000(18,000 증가), 국민은행 164, 농협생명보험 5,754(162 증가), 농협중앙회 8,628(19,252 감소), 롯데손해보험 11,600(400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32,63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아이엠뱅크 305, 우리은행 1,245(4,999 감소)	174,386	20,414	25,594	169,206	
▶ 증권(소계)							
본인	상장주식	LG생활건강 7주(3주 증가), SK텔레콤 40주, 삼성전자 50주, 쿠팡비엔에이치 78주	1,479,130	5,029	62	1,484,097	
			10,167	5,029	62	15,134	
배우자	비상장주식	주식회사 우성알씨 6,800주	1,468,963	0	0	1,468,963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채무(소계)							
본인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450,000(13,177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6,000	469,177	0	13,177	456,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구미원호푸르지오 임대보증금	30,000	0	0	3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임대보증금	22,000	0	0	22,000	
배우자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482,565(39,093 증가)	443,472	80,000	40,907	482,565	
▶ 회원권(소계)							
본인	골프	선산컨트리클럽	30,000	0	0	30,000	
총 계			2,810,341	-42,055	-28,011	2,796,297	증감액: -14,044천원 (가액변동: 3,869천원)